

# 삼성 인터넷상해보험 7.0 (무배당)

보험약관 [2021년 4월 개정약관]

본 상품은 보장성보험으로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이고, 저축(연금)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삼성생명

SAMSUNG

##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생명은 “보험은 사랑”이라는 컨셉 아래  
고객의 사랑이 평생 이어지도록 든든한 힘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삼성생명이 있기까지 한결같이 성원해 주신  
고객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언제 어디서나 고객이 있는 곳에는  
삼성생명이 함께 하는 고객 여러분의  
'신뢰받는 삶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 약관 이용가이드 북

## 01 보험 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02 한 눈에 보는 약관의 구성

|                                                                                     |                    |                                                              |
|-------------------------------------------------------------------------------------|--------------------|--------------------------------------------------------------|
|    | 약관 이용 가이드 북        | 약관을 쉽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의 구성, 쉽게 찾는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지침서            |
|    | 약관 요약서             | 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등을 시각적 방법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요약한 설명서 |
|   | 보험약관<br>(주계약 & 특약) | 주계약약관 기본계약의 내용과 특약에 준용되는 공통 사항을 정한 기본약관                      |
|                                                                                     |                    | 특약약관 주계약약관에 정한 사항 외 선택 가입한 보장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약관              |
|  | 용어해설 및 색인 등        | 약관 이해를 돕기 위한 어려운 법률·보험용어의 해설, 관련 법규 등을 소비자에게 안내              |

## 03 QR 코드를 통한 편리한 정보 이용

QR(Quick Response)코드란?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상세내용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약관해설 영상                                                                             | 보험금 지급절차                                                                            | 전국 지점                                                                                 |
|  |  |  |

## 04 약관의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 (주계약 약관 기준)

보험 약관 **핵심사항** 등과 관련된 **해당 조문, 영상자료** 등을 안내드리오니  
보험회사로부터 약관을 수령한 후,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 ·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1.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 제한 사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2. 청약철회

제17조(청약의 철회)



### 3. 계약취소

제18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4. 계약무효

제19조(계약의 무효)



### 5. 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효과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6. 계약 후 알릴의무 및 위반효과

제14조의2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변경 통지의무 및 위반의 효과)



### 7. 보험료 연체 및 해지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8. 부활(효력회복)

제 27 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9. 해지환급금

제2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제32조(해지환급금)



## 05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꿀팁

아래 6가지 꿀팁을 활용하시면 약관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                  |
|--------------------------------------------------------------------------------------------|------------------|
| 1. 시각화된 ‘ <b>약관요약서</b> ’를 활용하시면 계약 일반사항, 가입시 유의사항, 민원사례 등 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b>약관요약서</b>     |
| 2. 약관 이용가이드북의 ‘ <b>약관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b> ’를 이용하시면 약관 내용 중 핵심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b>약관 이용가이드북</b> |
| 3. ‘ <b>목차</b> ’를 활용하시면 주계약 및 제도성특약 <b>약관</b> 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b>목차</b>        |
| 4. 약관 내용 중 어려운 보험용어는 주요 용어 해설의 <b>용어해설</b> , <b>약관본문 Box안의 예시</b> 등을 참고하시면 약관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 <b>주요 용어 해설</b>  |
| 5. 스마트폰으로 약관 이용가이드북의 <b>QR코드</b> 를 인식하시면 약관 해설 동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등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b>약관 이용가이드북</b> |
| 6. ‘ <b>인용된 법령 내용</b> ’을 활용하시면 약관에서 인용한 법률 조항 및 규정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b>인용된 법령 내용</b> |

## 06 기타 문의 사항

※ 당사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http://www.samsunglife.com)) **상품공시실**에 상품요약서와 보험약관이 공시되어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상품 내용이 궁금하거나 약관을 분실하였을 경우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코너에서 계약변경,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MY 삼성생명, 콜센터(1588-3114)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다음의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MY삼성생명    계약조회, 기본계약사항, 보장내용조회, 보험계약대출, 자동이체 조회/변경, 계약변경, 계약금액 감액, 변액보험 펀드변경, 보험료 납입 등
- ※ MY 삼성생명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가까운 삼성생명 고객플라자에 신분증, 본인명의 은행통장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여 MY 삼성생명 등록신청(최초 1 회)을 하셔야 합니다.

☎ 콜센터  
1588-3114

자동이체신청, 변경, 해지, 보험료 납입신청, 청약철회 접수,  
품질보증접수, 보험계약대출신청, 각종 상담문의 등  
※ 콜센터로 전화주시면 한번에 모든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One-Call-Service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ARS를 이용한 조회업무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 E-mail 서비스    고객님의 E-mail을 등록하시면 자동이체 입금결과, 보험계약대출내역  
등을 알려드릴 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건강정보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mail 서비스는 삼성생명 콜센터, 담당 보험설계사,  
고객플라자, MY삼성생명 등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 거래단계별 필요한 금융꿀팁 또는 핵심정보 등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FINE, [fine.fss.or.kr](http://fine.fs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고객님의께서 가입하신 보험계약에 대해 분쟁조정이 필요하거나 보험금 지급처리내용 등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등을 통해 상담을 받거나  
분쟁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쉽게 이용할 수 있는

## 약관 요약서

이 요약서는 그림 · 도표 · 아이콘 · 삽화 등 시각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상품 및 약관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요약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1 보험계약의 개요

|            |                     |
|------------|---------------------|
| ■ 보험회사명    |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
| ■ 보험상품명    | 삼성 인터넷상해보험 7.0(무배당) |
| ■ 보험상품의 종류 | 상해보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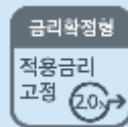
## 01 상품의 주요 특징

-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재해사망 및 재해장해를 보장하는 상해보험 상품입니다.
- 이 상품은 삼성생명 다이렉트(<http://direct.samsunglife.com>) 홈페이지에서 [전자청약](#)을 통해 직접 가입하실 수 있으며, 대면채널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02 '상품명'으로 상품의 특징 이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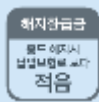
### ■ 보험상품명 : 삼성 인터넷상해보험 7.0(무배당)

- 1) 상해 피보험자의 재해사망 및 재해장해를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입니다.
- 2) 무배당 보험계약자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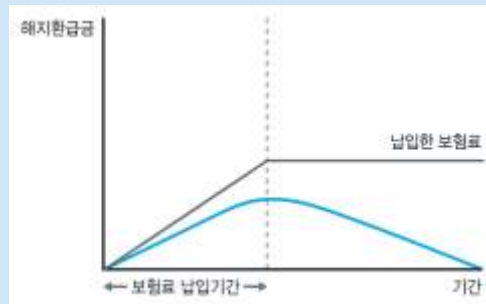
## 2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 01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02 기타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상품의 주요 특성



#### 1. 보장성 보험

- 이 보험은 재해로 인한 사망 및 장애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이며, **저축이나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중도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2.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사항

- 이 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 예금자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03 기타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감액 관련

- 이 보험계약은 보험료를 장기간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의 소득을 감안하여 보험료 수준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감액부분만큼 해지로 처리되어 해지공제금액 상당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04 기타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1. 주계약 관련 유의할 사항

- "대중교통사고"라 함은 해당 주계약 약관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 분류표 (약관 별표5 참조)에서 정한 재해 사고를 말합니다.
- 주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으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 위험등급에 해당하는 보험료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정산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증액된 보험료 및 정산금액을 추가로 납입하지 않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금(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한 일반재해사망보험금 또는 일반재해장해보험금)을 변경전 · 후의 직종 위험등급별 위험지수 비율로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 2. 소멸사유

- 주계약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3. 납입면제사유

-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애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애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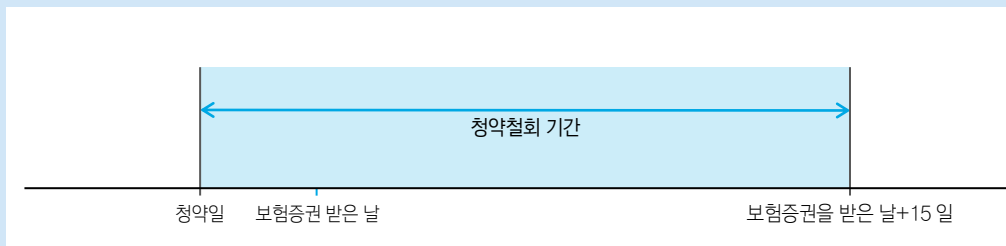
### 3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의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가입하신 상품의 세부 약관과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01 청약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 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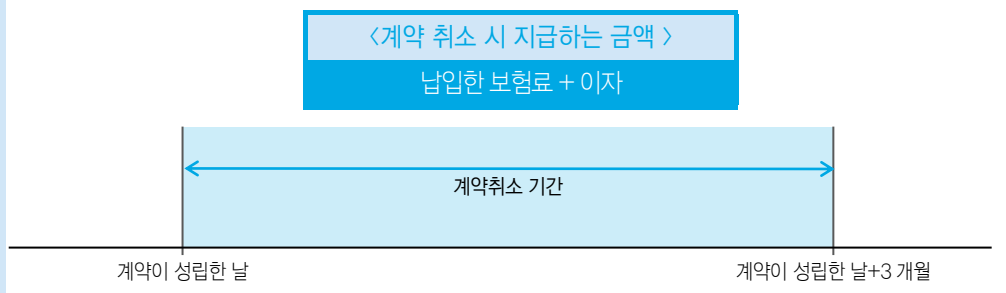
- 1) 청약한 날부터 30 일을 초과한 경우
- 2) 전문보험계약자(단체보험계약자, 주권상장법인 제외)가 체결한 계약

#### 02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 ☒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 ☒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 자필서명은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을 포함합니다.

\*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 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03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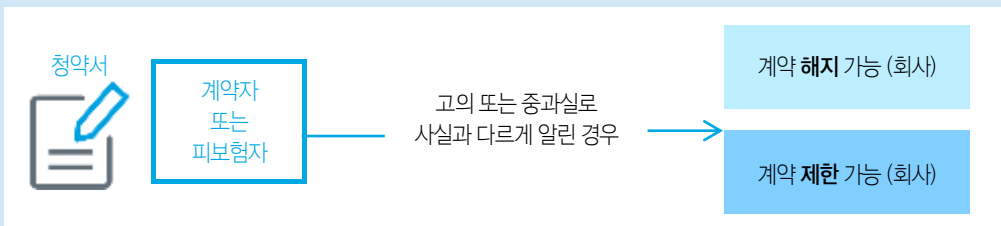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 04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청약서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렸을 경우 **보험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회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대신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 판례 [대법원 2007.6.28. 선고 2006 다 59837 판결]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



### 민원 사례

A 씨는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 처방을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려주고,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OO건강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을 청구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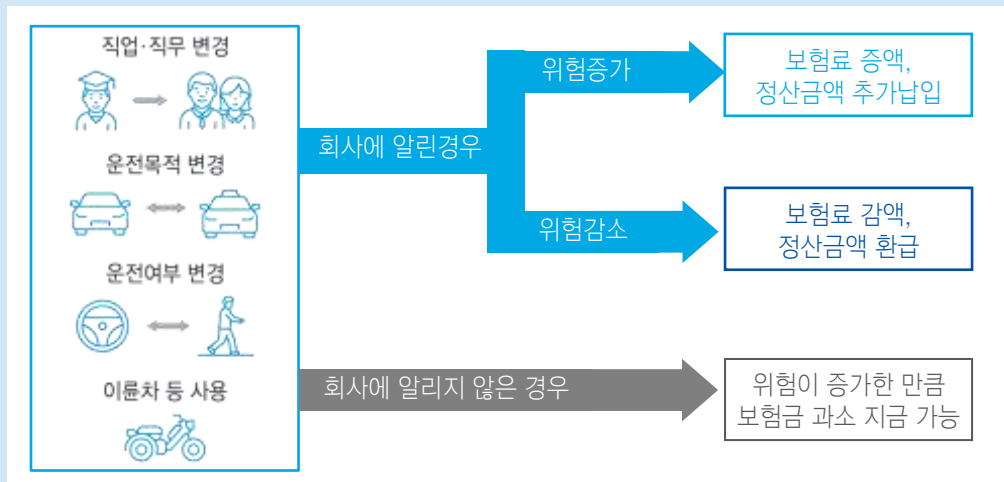
## 05 보험계약 후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보험계약자 등은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으로

-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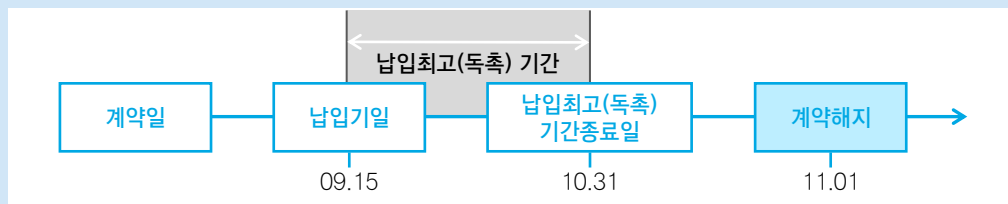


## 06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 납입최고(독촉)기간 : 14 일 이상(보험기간 1 년 미만인 경우 7 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합니다.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마지막 날까지로 하며, 이는 약관에 정한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니버설 상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납입연체

- ① 제 2 회 이후 보험료를 연체한 경우
- ② 유니버설 상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을 때

## 07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08 보험계약대출



이 계약은 보험계약대출을 운용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대출이율의 공시>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http://www.samsunglife.com))의 “상품공시실” 내 “보험상품적용이율” - “보험계약대출이율 변동현황”에서 공시합니다.

## 09 보험금 청구방법 및 지급절차

### 1. 보험금의 청구방법



- 보험금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고객센터나 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담당컨설턴트/우편/FAX/인터넷 등을 통하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는 홈페이지(<http://www.samsunglife.com>) 또는 사고보험금 전용콜센터 (☎ 1577-4118) 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 FAX/인터넷/모바일 접수의 경우 접수 가능 금액 등의 제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 청구 유형별로 세부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별 청구 가능 보험금>

|                 | 사망 | 장해 | 진단 | 실손 | 입원·통원<br>수술·골절 |
|-----------------|----|----|----|----|----------------|
| 고객플라자 / 지점방문    | ●  | ●  | ●  | ●  | ●              |
| 우편              |    | ●  | ●  | ●  | ●              |
| FAX / 인터넷 / 모바일 |    |    |    | ●  | ●              |



### 3.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 사고보험금 청구서류 대표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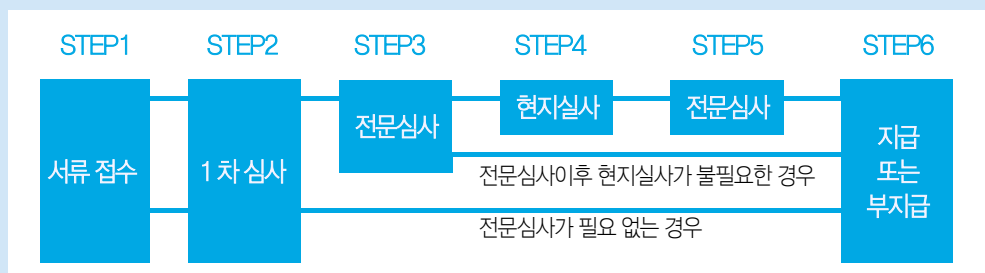
| 구분 | 진단서          | 입·퇴원<br>확인서 | 수술<br>확인서  | 통원<br>확인서  | 진단사실<br>확인서류   | 재해<br>입증서류         | 공통         |
|----|--------------|-------------|------------|------------|----------------|--------------------|------------|
| 사망 | ●<br>(사망진단서) |             |            |            |                | ●<br>(재해관련<br>보험금) | 청구서<br>신분증 |
| 장해 | ●<br>(장해진단서) |             |            |            |                |                    |            |
| 진단 | ●            |             |            |            | ●<br>(검사결과지 등) |                    |            |
| 입원 |              | ●           |            |            |                |                    |            |
| 수술 |              |             | ●          |            |                |                    |            |
| 통원 |              |             |            | ●          |                |                    |            |
| 실손 |              | ●<br>(입원시)  | ●<br>(수술시) | ●<br>(통원시) |                |                    |            |

※ 위 표는 대표적인 예시만 나타낸 것으로 보험금 청구 전에 보험회사에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보험금 지급절차



- 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보험금 지급을 심사합니다.
- 보험금 지급기일은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 영업일 이내 입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급기일은 접수 후 10 영업일 이내로 합니다.
-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이후에 회사는 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보험금의 청구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http://www.samsunglife.com>) 또는 사고보험금 전용콜센터(☎ 1577-4118)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약관 이용가이드북 보험금 지급절차(QR 코드)로 접속하시면 보험금 지급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 주요 보험용어 해설

###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장에 따라 별도의 보장개시일이  
존재할 수 있음

###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 보험사고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원인이  
되는 사고

###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입원 및 보험기간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해지환급금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 보험약관 쉽게 이해하기

- 01. 보험계약 관련 유의할 사항
- 0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례
- 03. 주요 민원사항
- 04.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조회 및 제공에  
관한 고객권리안내문

이 ‘보험약관 쉽게 이해하기’는 다소 생소한 보험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등 보험약관의 일반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내용은 표준약관 조항과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 등을 들어 설명한 것으로 가입하신 상품의 세부 약관과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01. 보험계약 관련 유의할 사항

- 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관련 표준약관과 함께 기재하였으며, 계약 전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표준약관을 기재한 내용으로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과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품의 “약관”에 기재하고 있으니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 표준약관 제 14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13 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해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고위험 취미(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 타사 보험계약 가입 여부 등으로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라면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 계약자가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여야 합니다.

### 주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되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 >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고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는 기재하지 않아 회사가 고혈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 계약의 취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표준약관 제 18 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④ 회사가 제 1 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 설

· 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1. 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2. 약관의 중요한 계약사항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3.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 3 계약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표준약관 제 17 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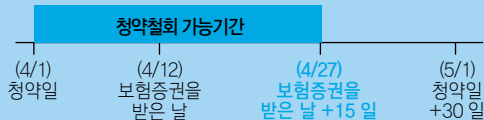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 일이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해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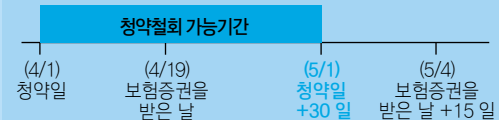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 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다만, 진단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 일이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예 시

#### CASE1



#### CASE2



일반적으로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CASE2)의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 일(5/4 일)이 청약을 한 날부터 30 일(5/1 일)을 초과하므로 청약철회가능기간은 5/1 일까지로 합니다.

#### 4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표준약관 제 19 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 2 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해설

-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계약의 무효사유에 대하여 각 상품별 보험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표준약관 제 29 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다만,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 32 조(해지환급금) 제 1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해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6 제 2 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유니버설상품의 경우 해지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 26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 일(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7 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해 설**

- 계약자가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유니버설상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포함)에는 납입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로 하며, 이는 약관에 정한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 시**

(9/15)  
납입기일

(10/31)  
다음달 마지막날

납입최고(독촉)기간

(11/1) 계약해지

납입기일(9/15)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이 지난 11/1 일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 7 납입연체로 해지된 계약에 대하여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표준약관 제 27 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 26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 해 설

- 보험료 납입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8 주계약 또는 특약의 보장개시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표준약관 제 23 조(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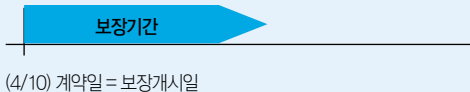
### 해 설

-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 보장개시일이 계약일과 다른 경우

일부 상품의 경우는 보장개시일이 계약일과 다릅니다. 반드시 해당 약관에서 “보장개시일” 관련 조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ASE1) 정기특약의 경우



#### (CASE2) 암진단특약의 경우



암진단특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장을 개시하며, 그 이전에 암이 발생하여도 회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0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례

-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반드시 해당 상품의 세부 약관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실 관계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례 1 재해의 정의에 관한 사례



야구공에 맞아 안면부 뼈가 골절되었다.



어깨운동 중 무리하여 어깨인대가 파열되었다.

#### 해설

- 약관에서 보상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한합니다. 외래의 사고란 사고 자체가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 무리한 운동 중 다친 경우는 외부의 요인에 기인한 바가 없는 경우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례 2 장애의 판정에 대한 사례



길을 걷던 중 교통사고로 발목이 골절되어 운동 장애가 발생하였고 회복이 불가능하다.



길을 걷던 중 교통사고로 발목이 골절되어 운동 장애가 발생하였으나 장래 회복할 가망이 있다.

#### 해설

- “장애”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 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또한,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애지급률의 20%를 한시 장애의 장애지급률로 정합니다.

### 사례 3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보험금에 관한 사례



암진단특약의 계약일부터 100 일만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다.



암진단특약의 계약일부터 50 일만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다.

#### 해설

- 암진단특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 날부터 보장을 개시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발병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진단특약과 같이 계약일과 보장개시일이 다른 경우가 있으니, 각 상품별 약관에서 보장개시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 4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례

|                                                       |   |                                                             |
|-------------------------------------------------------|---|-------------------------------------------------------------|
| ○ 피보험자가 고혈압 관련 병력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그 후 2년 이내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 × | 피보험자가 고혈압 관련 병력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그 후 2년 이내에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로 진단받았다. |
|-------------------------------------------------------|---|-------------------------------------------------------------|

#### 해설

-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례 5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병한 질병으로 치료받는 경우

|                                    |   |                                  |
|------------------------------------|---|----------------------------------|
| ○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디스크로 보험기간 중 치료하였다. | × |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디스크로 보험기간 중 치료하였다. |
|------------------------------------|---|----------------------------------|

#### 해설

- 해당 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병한 질병이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병한 질병을 원인으로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료 받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사례 6 암직접치료보험금에 관한 사례 I

|                            |   |                      |
|----------------------------|---|----------------------|
| ○ 위암으로 인해 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 × | 위암 진단을 위해 생검을 시행받았다. |
|----------------------------|---|----------------------|

#### 해설

- 수술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다만,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은 수술에서 제외됩니다.

#### 사례 7 암직접치료보험금에 관한 사례 II

|                                 |   |                         |
|---------------------------------|---|-------------------------|
| ○ 유방암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위해 유방절제술을 받았다. | × | 암수술 후 후유증 치료를 위해 입원하였다. |
|---------------------------------|---|-------------------------|

#### 해설

- '암의 직접치료'는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을 포함하지만, 암이나 암치료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경우까지 '암의 직접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03. 주요 민원사항

---

### 유형 | 보험종류(순수보장형/만기환급형) 미인지 관련

- A 고객은 보험가입 당시 보험모집자(컨설턴트)B로부터 보험을 가입하면 만기시까지 각종 질병/상해를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만기에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함
- 그러나 해지환급금을 확인하기 위해 콜센터와 상담하는 도중, 고객이 가입한 보험은 순수보장형이므로 만기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민원 제기

#### [유의사항]

건강/상해보험은 각종 상해와 질병을 보장하기 위한 보장성 보험으로, 만기시 보험료 환급 여부에 따라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으로 구분됩니다. 만기환급형은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있는 반면, 순수보장형은 만기환급형 대비 보험료가 저렴하나 납입된 대부분의 보험료가 보장을 위한 금액으로 사용되고 적립이 되지 않아 만기시 환급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또한, 주보험 외에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없는 특약의 경우에도 만기시 환급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건강/상해보험 가입시에는 이러한 상품별 특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정보의 수집 · 이용, 조회 및 제공에 관한 고객권리안내문 ]

이 권리안내문은 금융거래시 개인정보정보의 수집 · 이용, 조회 및 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하신 고객님에게 이와 관련된 고객님의 권리를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 삼성생명원은 고객님의 개인정보정보를 고객님께서 동의하신 목적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 · 이용할 것이며, 동의하신 범위 이상으로 불법 · 부당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고객님은 삼성생명이 처리하는 고객님의 개인정보정보와 관련하여 다음의 권리를 가집니다.

### 개인정보정보 수집 · 이용, 조회 및 제공 동의 철회(처리정지권)

- 계약 체결 3개월 이후부터 개인정보정보 수집 · 이용, 조회 및 제공 동의를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유지 · 관리 · 상담, 기타 업무위탁에 따른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역의 제공을 받지 않을 것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정보 수집 · 이용, 조회 및 제공 동의를 철회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회의 대상 및 내용 등을 특정하여 회사 대표전화(1588-3114)로 전화 하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http://www.samsunglife.com)) 또는 서면으로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기바라며, 이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에 조치를 완료합니다.

###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

-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그 거절 ·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 · 주소 · 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 소개 등을 위한 제공 · 이용 동의 철회, 연락 중지 요청

- 고객님의 개인정보정보를 새로운 금융상품의 소개 등 영업목적 또는 서비스 제공목적으로 제공 ·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고객님의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영업목적 이용 동의 철회 또는 연락 중지 청구는 무료 ARS 전화(080-331-3114) 또는 저희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http://www.samsunglife.com)) MY 삼성생명에서 직접 처리하실 수 있으며(MY 삼성생명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에 조치를 완료합니다.

### 제공 사실 통보 요구

- 고객님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고객플라자 방문, 회사 대표전화(1588-3114),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 받아 최근 1년간의 정보 제공에 대하여 제공받는 자, 그 이용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내용 등을 알리도록 요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해 통보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7일 이내에 통보 또는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 열람 및 정정 · 삭제 청구

- 고객플라자, 회사 대표전화(1588-3114),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저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님의 정보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서면, 전자문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 제공 또는 열람한 고객님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 · 삭제를 요구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정정 · 삭제청구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없이 해당 정보의 제공 · 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적의 조치한 후 그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알려드립니다.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 고객은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 보상

- 삼성생명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정보의 수집 · 이용, 조회, 제공 및 위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개인정보 정보관리 · 보호부서 : 02-2259-700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 길 11 (삼성전자빌딩))
-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고객권리안내문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등으로 그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 보험약관

- 상품 목차
- 주계약 약관
  - 상황별 목차
  - 조항별 목차
- 제도성특약 약관
- [부록]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 내용

## ■ 상품 목차

---

### 주계약

|                     |   |
|---------------------|---|
| 삼성 인터넷상해보험 7.0(무배당) | 1 |
|---------------------|---|

---

### 제도성 특약 및 부록

|                    |    |
|--------------------|----|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 44 |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47 |
|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 49 |
| [부록]약관에서 인용된 법령 내용 | 54 |

## ■ 주계약 약관

---

삼성

인터넷상해보험 7.0(무배당)

약관

## ■ 상황별 목차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필요한 정보를 해당 약관 조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항번호는 주계약 약관 기준]

|                 |                                      |                                                     |
|-----------------|--------------------------------------|-----------------------------------------------------|
| 계약의 체결에<br>관하여  | 계약에서 쓰이는 용어를 알고 싶어요                  | · 제 2 조(용어의 정의)                                     |
|                 | 청약을 철회하고 싶어요                         | · 제 17 조(청약의 철회)                                    |
|                 | 계약 전 알릴 의무가 무엇인가요                    | · 제 13 조(계약 전 알릴 의무)<br>· 제 14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                 | 보장이 언제 시작되나요                         | · 제 23 조(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 보험료의 납입에<br>관하여 | 보험료 납입면제사유를 알고 싶어요                   | · 제 4 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                 | 납입최고(독촉)이 무엇인가요                      | · 제 26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br>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                 | 보험을 부활시키고 싶어요                        | · 제 27 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br>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 보험금에 관하여        | 보험의 보장내용을 알고 싶어요                     | ·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                 | 보험금은 청구하면 언제 지급되나요                   | · 제 8 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                 | 보험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 · 제 11 조(보험수익자의 지정)                                 |
| 계약의 변경에<br>관하여  |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싶어요,<br>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싶어요 | · 제 20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                 | 주소 또는 연락처가 바뀌었어요                     | · 제 10 조(주소변경통지)                                    |
|                 |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요                         | · 제 29 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br>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
|                 | 보험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 제 21 조(보험나이)                                      |



## ■ 조항별 목차

|                               |    |                                |    |
|-------------------------------|----|--------------------------------|----|
| <b>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b>        |    | <b>제27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b> |    |
| 제1조 [목적]                      | 4  |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17 |
| 제2조 [용어의 정의]                  | 4  | <b>제28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해지된</b>   |    |
| 제2조의2 [“대중교통사고”의 정의]          | 5  |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17 |
| <b>제2관 보험금의 지급</b>            |    | <b>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b>    |    |
|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5  | 제29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    |
|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5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 18 |
|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7  | 제30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18 |
| 제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 7  | 제31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19 |
| 제7조 [보험금의 청구]                 | 8  | 제32조 [해지환급금]                   | 19 |
|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8  | 제33조 [보험계약대출]                  | 19 |
| 제9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9  | 제34조 [배당금의 지급]                 | 19 |
| 제10조 [주소변경통지]                 | 9  | <b>제7관 분쟁의 조정</b>              |    |
| 제11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 9  | 제35조 [분쟁의 조정]                  | 19 |
| 제12조 [대표자의 지정]                | 9  | 제36조 [관할법원]                    | 19 |
| <b>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b>  |    | 제37조 [소멸시효]                    | 19 |
| 제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 10 | 제38조 [약관의 해석]                  | 19 |
| 제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10 | 제39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20 |
| 제14조의2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변경 통지의무 | 10 | 제40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20 |
| 및 위반의 효과]                     |    | 제41조 [개인정보보호]                  | 20 |
| 제15조 [사기에 의한 계약]              | 12 | 제42조 [준거법]                     | 20 |
| <b>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b>       |    | 제43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21 |
| 제16조 [보험계약의 성립]               | 12 |                                |    |
| 제17조 [청약의 철회]                 | 13 |                                |    |
| 제18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13 |                                |    |
| 제19조 [계약의 무효]                 | 14 |                                |    |
| 제20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 14 |                                |    |
| 제21조 [보험나이]                   | 15 |                                |    |
| 제22조 [계약의 소멸]                 | 15 |                                |    |
| <b>제5관 보험료의 납입</b>            |    |                                |    |
| 제23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16 |                                |    |
| 제24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16 |                                |    |
| 제25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17 |                                |    |
| 제26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    |                                |    |
|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17 |                                |    |

## 삼성 인터넷상해보험 7.0(무배당) 약관

###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 1 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나. 장애: (별표 3)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애상태를 말합니다.
-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 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 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 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설명

##### 〈연단위 복리 예시〉

원금 100 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 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2 년 시점의 총 이자 금액

· 1 년차 이자 =  $\frac{100 \text{ 원}}{\text{원금}} \times 10\% = 10 \text{ 원}$

· 2 년차 이자 =  $\frac{(100 \text{ 원} + 10 \text{ 원})}{\text{원금} \quad 1 \text{ 년차 이자}} \times 10\% = 11 \text{ 원}$

→ 2 년 시점의 총 이자금액 = 10 원 + 11 원 = 21 원

-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http://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다. 연계약해당일: 계약일부터 1 년마다 돌아오는 매년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제 2 조의 2 [“대중교통사고”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대중교통사고”라 함은 별표 5(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 분류표)에서 정한 재해사고를 말합니다.

##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 제 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대중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 대중교통사고사망보험금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대중교통사고 이외의 교통재해(별표 4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한 교통재해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로 사망하였을 경우 : 교통재해사망보험금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이하 대중교통사고사망보험금,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합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이라 합니다)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교통재해장해보험금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일반재해장해보험금  
(이하 교통재해장해보험금, 일반재해장해보험금을 합하여 “재해장해보험금”이라 합니다)

### 제 4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다음은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에 관한 설명입니다.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다음은 장해지급률에 관한 설명입니다.

② 제 1 항,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4 호 및 제 5 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 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부터 180 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향후 고정(계속 유지)될 것으로 인정되는 장해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 1 항,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4 호 및 제 5 호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 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④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보장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기간이 10 년 이상인 계약: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부터 2 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 년 미만인 계약: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부터 1 년 이내

⑤ 제 1 항,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4 호 및 제 5 호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상 2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또한, 하나의 장

해가 다른 장애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장애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애로 둘 이상의 파생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애의 장애지급률을 합산한 장애지급률과 최초 장애의 장애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장애지급률을 적용합니다.

⑥ 제 1 항,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4 호 및 제 5 호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2 가지 이상의 장애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애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별표 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 6 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애분류표(별표 3 참조)상의 2 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중 높은 장애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별표 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4 호 및 제 5 호에서 다른 재해로 인하여 장애가 2 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장애가 이미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애상태에 해당하는 재해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재해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별표 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애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⑩ 장애분류표(별표 3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는 신체의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분류표(별표 3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다음은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 면제 관련 특이 사항에 관한 설명입니다.

⑪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보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여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                                                                      |
|----------|----------------------------------------------------------------------|
| 용어<br>해설 | 〈실종선고〉<br>어떤 사람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일정절차에 따라 법원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⑫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4 호 및 제 5 호에서 그 재해 전에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애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 8 항에 규정하는 장애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애에 대한 재해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장애상태에 해당하는 재해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재해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애로 재해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애
2. 제 1 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애 또는 재해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애

|    |                                                                                                                                                                                                                                                                                                                                                                                                                                 |
|----|---------------------------------------------------------------------------------------------------------------------------------------------------------------------------------------------------------------------------------------------------------------------------------------------------------------------------------------------------------------------------------------------------------------------------------|
| 설명 | <p>〈제 4 조 제 12 항 제 1 호 예시〉</p> <p>보험가입 전 한 팔에 장애지급률 5%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었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재해로 팔의 장애가 장애지급률 80%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가입 후 발생한 재해로 인한 장애지급률 80%에서 보험가입 전 발생한 장애지급률 5%를 뺀 75%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p> <p>〈제 4 조 제 12 항 제 2 호 예시〉</p> <p>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을 원인으로 오른쪽 눈에 장애지급률 5%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었던 피보험자가 이후에 재해를 원인으로 눈의 장애가 장애지급률 80%에 해당하는 장애가 된 경우 이 계약은 질병으로 인한 장애는 보장하지 않으므로 장애지급률 80%에서 질병으로 인한 장애지급률 5%를 뺀 75%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p> |
|----|---------------------------------------------------------------------------------------------------------------------------------------------------------------------------------------------------------------------------------------------------------------------------------------------------------------------------------------------------------------------------------------------------------------------------------|

⑬ 이 계약에서 「동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⑭ 이 계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⑮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이외의 교통재해” 또는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라 합니다)」에 따른 연명의료(이하, “연명의료”라 합니다)를 받던 피보험자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보험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따라 피보험자가 실제 사망한 시점을 사망일로 보고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연명의료의 시행사유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결과인 경우에는 제 5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1.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사고”로 인하여 연명의료를 받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  
: 대중교통사고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사고 이외의 교통재해”로 인하여 연명의료를 받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  
: 교통재해사망보험금
3.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연명의료를 받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  
: 일반재해사망보험금

|    |                                                                                                                                                                                           |
|----|-------------------------------------------------------------------------------------------------------------------------------------------------------------------------------------------|
| 설명 | <p><b>〈보험금 지급사례 예시〉</b></p> <p>「암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과 「대중교통사고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을 각각 가입한 피보험자가 대중교통사고로 인하여 연명의료를 받던 중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보험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 「대중교통사고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의 대중교통사고사망보험금만 지급됩니다.</p> |
|----|-------------------------------------------------------------------------------------------------------------------------------------------------------------------------------------------|

▶ 다음은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 면제의 합의에 관한 설명입니다.

⑯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호에서 제 5 호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 3 자를 정하고 그 제 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3 자는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⑰ 계약자와 회사가 제 1 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 3 자를 정하고 그 제 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3 자는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 4 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해당 보험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가. “대중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대중교통사고사망보험금”  
나. “대중교통사고 이외의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교통재해사망보험금”  
다.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일반재해사망보험금”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제 6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 7 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의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관할경찰서 사고사실 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 1 항 제 2 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또는 경찰법 제 2 조(국가경찰의 조직)에서 정한 경찰서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 8 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 7 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6(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 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 1 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7 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 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 6 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 4 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16 항 및 제 17 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등에 대해 제 3 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용어  
해설**

###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④ 제 3 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합니다.

⑤ 제 3 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 14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 1 항 및 제 3 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제 6 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 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 제 9 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 3 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 1 호에서 제 3 호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또는 제 4 호에서 제 5 호에 따른 재해장해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                                                                                                               |                                                                            |
|---------------------------------------------------------------|---------------------------------------------------------------------------------------------------------------|----------------------------------------------------------------------------|
| 설명                                                            | <b>〈보험금을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 예시〉</b>                                                                                  |                                                                            |
|                                                               | 예) 평균공시이율 : 2.0% 가정, 보험금 : 9 천만원, 지급사유 발생 일자 : 2020 년 6 월 1 일일 때 보험금을 일시에 받지 않고 3 년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 |                                                                            |
|                                                               | <b>지급일</b>                                                                                                    | <b>지급 금액</b>                                                               |
|                                                               | 2020 년 6 월 1 일                                                                                                | 3 천만원                                                                      |
|                                                               | 2021 년 6 월 1 일                                                                                                | $3 \text{ 천만원} \times (1 + \text{평균공시이율 } 2.0\%) = 30,600,000 \text{ 원}$   |
|                                                               | 2022 년 6 월 1 일                                                                                                | $3 \text{ 천만원} \times (1 + \text{평균공시이율 } 2.0\%)^2 = 31,212,000 \text{ 원}$ |
|                                                               | <b>총액</b>                                                                                                     | 91,812,000 원                                                               |
| ※ 평균공시이율 2.0%는 예시를 위한 이율이며, 실제 지급 금액은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                                                                                                               |                                                                            |

### 제 10 조 [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서면, 전화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 1 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제 11 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호에서 제 3 호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며, 제 4 호 및 제 5 호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          |                                                             |
|----------|-------------------------------------------------------------|
| 용어<br>해설 | <b>〈법정상속인〉</b><br>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서에 따라 상속받는 자 |
|----------|-------------------------------------------------------------|

### 제 12 조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 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 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 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 명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보험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계약자들이 연대(連帶)하여 부담합니다.

|          |                                                                                                                                   |
|----------|-----------------------------------------------------------------------------------------------------------------------------------|
| 용어<br>해설 | <b>〈연대(連帶)〉</b><br>2 인 이상의 계약자가 각자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며(지분만큼 분할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는 다름), 계약자 1 인이 책임을 이행하는 경우 나머지 계약자는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
|----------|-----------------------------------------------------------------------------------------------------------------------------------|

###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 제 13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이를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 의무"와 같습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제 14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13 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 년이 지났을 때. 단, 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보장 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1 년이 지났을 때.
  4.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 년이 지났을 때
  5.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설명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고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는 기재 하지 않아 회사가 고혈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 ③ 제 1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 32 조(해지환급금) 제 1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④ 제 13 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제 14 조의 2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변경 통지의무 및 위반의 효과]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이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이라 합니다)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이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통지”라 합니다)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                  |                                                                                                                                                                                         |
|------------------|-----------------------------------------------------------------------------------------------------------------------------------------------------------------------------------------|
| <b>용어<br/>해설</b> | <b>〈직업〉</b><br>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예: 6 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br>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합니다.<br>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br><b>〈직무〉</b><br>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
|------------------|-----------------------------------------------------------------------------------------------------------------------------------------------------------------------------------------|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 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 보조용 의자차인 전동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하게 된 경우

② 회사는 제 1 항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통지”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위험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 20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
|-----------|-------------------------------------------------------------------------------------------------------------------------------------------------|
| <b>설명</b> | <b>〈 피보험자의 위험 변경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 절차 〉</b><br>위험변경사항 통지(우편, 전화, 방문 등) → 계약자, 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 회사의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 정산금액 처리(환급 또는 추가납입) → 계약변경 완료 |
|-----------|-------------------------------------------------------------------------------------------------------------------------------------------------|

③ 회사는 제 2 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계약자는 변경 후 직업 또는 직무 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1.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정산금액(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으로서, 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회사가 안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돌려 드립니다.(다만,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통지”된 내용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돌려 드립니다)

|                  |                                                                                                                                                            |
|------------------|------------------------------------------------------------------------------------------------------------------------------------------------------------|
| <b>용어<br/>해설</b> | <b>〈산출방법서〉</b><br>“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로서 이 보험의 보험료, 책임준비금, 해지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등)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한 기초서류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
|------------------|------------------------------------------------------------------------------------------------------------------------------------------------------------|

2.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고,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통지”를 받은 날 또는 회사가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정산금액을 추가로 청구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증액된 보험료 및 정산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 1 항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제 3 항 제 2 호에서 정한 회사의 청구금액(증액된 보험료 및 정산금액)을 추가로 납입하지 않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회사는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금(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한 일반재해사망보험금 또는 일반재해장해보험금)을 변

경전·후의 직종 위험등급별 위험지수 비율로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이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과 관계가 있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
| <b>용어<br/>해설</b> | <b>〈직종 위험등급별 위험지수〉</b><br>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에 따라 위험등급(비위험/중위험/고위험)을 달리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시 반영하는 지수를 말합니다. 이 때, 위험등급은 회사에서 정한 “직업분류 및 위험등급 분류표”를 따릅니다. |
|------------------|------------------------------------------------------------------------------------------------------------------------------------------------------|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 1 항 각 호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피보험자의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 4 항에 따라 보상됨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통보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 2 항에서 제 5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으로 피보험자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였음에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1 항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 32 조(해지환급금) 제 1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⑦ 제 6 항에서 정한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란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이 계약의 인수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⑧ 제 6 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사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 4 항 또는 제 5 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이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가 있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 4 항 또는 제 5 항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⑨ 제 1 항에서 제 8 항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2 가지 이상의 직업 또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위험의 직업 또는 직무를 적용 합니다.

#### 제 15 조 [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 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 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여기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 16 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 1 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회사가 제 2 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부터 5 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 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⑥ 제 5 항의 '청약일부터 5 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 26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⑦ 제 27 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 5 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제 17 조 [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단체보험계약자, 주권상장법인 제외)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                                                                                                                                                                                                                                          |
|------------------|------------------------------------------------------------------------------------------------------------------------------------------------------------------------------------------------------------------------------------------|
| <b>용어<br/>해설</b> | <b>〈전문보험계약자〉</b><br>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 2 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 6 조의 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 1-4 조의 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 일이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 1 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청약을 철회할 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⑥ 제 1 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제 18 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 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                                                              |
|------------------|--------------------------------------------------------------|
| <b>용어<br/>해설</b> | <b>〈통신판매계약〉</b><br>전화 · 우편 ·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

- ③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몰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모집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약관 및 계

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광기록매체,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으로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드립니다.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필서명"은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           |                                           |
|-----------|-------------------------------------------|
| <b>용어</b> | <b>〈법정상속인〉</b>                            |
| <b>해설</b>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서에 따라 상속받는 자 |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여기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제 19 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여기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감액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서면에 의한 동의"는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에 의한 동의를 포함합니다.
2. 만 15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                                                                    |
|-----------|--------------------------------------------------------------------|
| <b>용어</b> | <b>〈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b>                                              |
| <b>해설</b>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
|           | <b>〈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b>                                              |
|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 2 호의 만 15 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제 20 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의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2. 보험가입금액
3. 계약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변경에 대한 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                                                                                                                                                     |
|-----------|-----------------------------------------------------------------------------------------------------------------------------------------------------|
| <b>설명</b> | 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변경에 대한 내용을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 1 항 제 2 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 32 조(해지환급금) 제 1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제 2 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제 21 조 [보험나이]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만 나이를 별도로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제 1 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 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 개월 이상의 끝수는 1 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청약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사항이 신분증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분증에 기재된 나이 또는 성별로 정정하고,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여기서 "신분증"이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을 말합니다.

④ 제 3 항에 따라 보험금 및 보험료를 변경할 때 변경 전후의 책임준비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반환 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명

<보험나이>

보험나이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나이로서 피보험자의 출생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만 나이는 보험나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74 년 9 월 18 일

예 1) 계약일:            2020 년 1 월 18 일

2020 년 1 월 18 일

- 1974 년 9 월 18 일

만 45 년 4 월 0 일

→ 보험나이 45 세

예 2) 계약일:            2020 년 6 월 20 일

2020 년 6 월 20 일

- 1974 년 9 월 18 일

만 45 년 9 월 2 일

→ 보험나이 46 세

## 제 22 조 [계약의 소멸]

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
|------------------|----------------------------------------------------------------------------------------------|
| <b>용어<br/>해설</b> | <b>&lt; 책임준비금 &gt;</b><br>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

② 제 1 항의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 1 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 7 조(보험금의 청구) 제 1 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 8 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제 8 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준비금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 제 23 조 [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 1 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                                                                                                                                                             |
|------------------|-------------------------------------------------------------------------------------------------------------------------------------------------------------|
| <b>용어<br/>해설</b> | <b>&lt;보장개시일&gt;</b><br>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

③ 회사는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 13 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 14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단,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 초과 청약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돌려 드립니다.

### 제 24 조 [제 2 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           |                                      |
|-----------|--------------------------------------|
| <b>용어</b> | <b>〈납입기일〉</b>                        |
| <b>해설</b> | 계약자가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 제 25 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이 계약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 26 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 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 1 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 1 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 1 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 32 조(해지환급금) 제 1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
|-----------|------------------------------------------------|
| <b>용어</b> | <b>〈납입최고(독촉)〉</b>                              |
| <b>해설</b> |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

#### 제 27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 26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 1 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 13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 14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 15 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 16 조(보험계약의 성립) 제 2 항에서 제 4 항 및 제 23 조(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의 경우 제 1 회 보험료는 부활(효력회복)시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③ 제 1 항에 따라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을 청약할 때 제 13 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 14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                                                                                                       |
|------------------|-------------------------------------------------------------------------------------------------------|
| <b>용어<br/>해설</b> | <b>〈부활(효력회복)〉</b><br>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
|------------------|-------------------------------------------------------------------------------------------------------|

#### 제 28 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 20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                                                                                                                                                                                                                                                                        |
|------------------|------------------------------------------------------------------------------------------------------------------------------------------------------------------------------------------------------------------------------------------------------------------------|
| <b>용어<br/>해설</b> | <b>〈강제집행〉</b><br>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br><b>〈담보권실행〉</b><br>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채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공된 담보로부터 담보권자가 채무를 변제받는 절차<br><b>〈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b><br>납세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하는 압류 및 공매 처분 등 절차 |
|------------------|------------------------------------------------------------------------------------------------------------------------------------------------------------------------------------------------------------------------------------------------------------------------|

-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 1 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 1 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 1 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 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 3 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 일 이내에 제 1 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 제 29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 32 조(해지환급금) 제 1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 32 조(해지환급금) 제 1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여기서 "장래를 향하여"란 그 효과가 미래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며, 서면동의를 철회한 시점까지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 제 30 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
|-----------|-------------------------------------------------------------------------------------------------------------------------------------------------------------|
| <b>설명</b> | 입원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20일간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확인서를 변조하여 입원일수 3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입원일수 2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② 회사가 제 1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 32 조(해지환급금) 제 1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제 1 항 제 1 호에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보험수익자 외에 다른 수익자에게는 그 수익자 몫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계약자에게는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보험수익자가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제 31 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 1 항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 1 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 2 항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 32 조(해지환급금) 제 1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 **제 32 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6(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제 33 조 [보험계약대출]**

이 계약은 보험계약대출을 운용하지 않습니다.

#### **제 34 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 **제 35 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 36 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제 37 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                                                                                                                    |
|-----------|--------------------------------------------------------------------------------------------------------------------|
| <b>설명</b> | <b>〈소멸시효〉</b><br>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2015년 1월 2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8년 1월 2일까지 보험금 등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

#### 제 38 조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 제 39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함)에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제 40 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 2 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                                                                                                                            |
|------------------|----------------------------------------------------------------------------------------------------------------------------|
| <b>용어<br/>해설</b> | <b>〈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b><br>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인 어려움, 경솔함, 경험 부족 등을 이용하여 동일·유사 사례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 제 41 조 [개인정보보호]

-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제 42 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 43 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용어  
해설**

**〈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1) 대중교통사고사망보험금(약관 제3조 제1호)

|          |                                            |
|----------|--------------------------------------------|
| 지급<br>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br>“대중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
| 지급<br>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500%                             |

(2) 교통재해사망보험금(약관 제3조 제2호)

|          |                                                  |
|----------|--------------------------------------------------|
| 지급<br>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대중교통사고 이외의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
| 지급<br>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0%                                   |

(3)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약관 제3조 제3호)

|          |                                              |
|----------|----------------------------------------------|
| 지급<br>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
| 지급<br>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200%                                 |

(4) 교통재해장해보험금 (약관 제3조 제4호)

|          |                                                                                        |
|----------|----------------------------------------------------------------------------------------|
| 지급<br>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br>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 지급<br>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500% × 해당 장해지급률                                                                |

(5) 일반재해장해보험금 (약관 제3조 제5호)

|          |                                                                                               |
|----------|-----------------------------------------------------------------------------------------------|
| 지급<br>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서 정한<br>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 지급<br>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250% × 해당 장해지급률                                                                       |

- (※)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으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 위험등급에 해당하는 보험료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정산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증액된 보험료 및 정산금액을 추가로 납입하지 않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회사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금(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한 일반재해사망보험금 또는 일반재해장해보험금)을 변경전 · 후의 직종 위험등급별 위험지수 비율로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제3호에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1. 재해의 정의

이 보험약관에서 재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발생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제1급 감염병 진단

## 2.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

다음 각 호는 이 보험약관에서 정의하는 재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 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 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호흡과 관련된 기타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1. 위 ( ) 안의 내용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 호, 2021.1.1 시행) 상의 분류번호를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발생(진단) 시점에 시행 중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적용합니다.

|           |                                                                                                                                                                                                                                                                                                                                                                      |
|-----------|----------------------------------------------------------------------------------------------------------------------------------------------------------------------------------------------------------------------------------------------------------------------------------------------------------------------------------------------------------------------|
| <b>설명</b> | <p>피보험자에게 발생(진단)된 사고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적용할 때, 약관에서 규정하는 「재해」에 해당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발생(진단) 당시에 시행 중인 제9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적용할 때 약관에서 규정하는 「재해」가 아닌 경우에는 약관에서 규정하는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p> <p>반대로 피보험자에게 발생(진단)된 사고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적용할 때, 약관에서 규정하는 「재해」에 해당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발생(진단) 당시에 시행 중인 제9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적용할 때 약관에서 규정하는 「재해」인 경우에는 약관에서 규정하는 「재해」로 봅니다.</p> |
|-----------|----------------------------------------------------------------------------------------------------------------------------------------------------------------------------------------------------------------------------------------------------------------------------------------------------------------------------------------------------------------------|

2. 발생(진단) 시점에 상기 “1.재해의 정의 및 2.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 인지 여부가 확인된 경우, 발생(진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개정으로 재해의 분류가 추가 또는 제외되더라도 상기 “1.재해의 정의 및 2.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 인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                                                                                                                                                                           |
|-----------|---------------------------------------------------------------------------------------------------------------------------------------------------------------------------|
| <b>설명</b> | 발생(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적용하여 약관에서 규정하는 「재해」에 해당될 수 없었던 경우, 발생(진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어 약관에서 규정하는 「재해」로 볼 수 있어 「재해 발생(진단)」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약관에서 규정하는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
|-----------|---------------------------------------------------------------------------------------------------------------------------------------------------------------------------|

3. 위 「1. 재해의 정의 ㉔」에 해당하는 감염병 진단은 보험사고 발생 당시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하며, 「2.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 ㉔」에 해당되더라도 보장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 □ 총칙

## 1. 장애의 정의

- 1) '장애'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 및 기능 상실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 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애지급률의 20%를 한시 장애의 장애지급률로 정합니다.
- 5) 위 4)에 따라 장애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특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특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될 때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2. 신체 부위

'신체 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 부위라 합니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 부위로 봅니다.

## 3. 장애의 판정

- 1) 하나의 장애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애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애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장애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2) 동일한 신체 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장애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각 신체 부위별 판정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3) 하나의 장애가 다른 장애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장애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애로 둘 이상의 파생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애의 장애지급률을 합산한 장애지급률과 최초 장애의 장애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장애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4) 의학적으로 뇌사 판정을 받고 호흡 기능과 심장박동 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애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뇌사 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 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 부위별 판정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5) 장애 진단서에는 ① 장애 진단명 및 발생 시기 ② 장애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애의 경우 ① 개호(장애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장애분류별 판정 기준

## 1. 눈의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
| 1) 두 눈이 멀었을 때                                 | 100 |
| 2) 한 눈이 멀었을 때                                 | 50  |
|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 35  |
|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 25  |
|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 15  |
|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 5   |
| 7)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 장애나 뚜렷한 조절 기능장애를 남긴 때 | 10  |
| 8) 한 눈에 뚜렷한 시야 장애를 남긴 때                       | 5   |
|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 장애를 남긴 때                 | 5   |

## 나. 장애판정 기준

- 1) 시력 장애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합니다.
-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 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 교정 시력을 말합니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유')를 말합니다.
-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 수동(Hand Movement)<sup>※1</sup>, 안전 수지(Finger Counting)<sup>※2</sup> 상태를 포함합니다.  
 ※ 주 1) 안전 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 2) 안전 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 상태
- 5) 안구(눈동자) 운동 장애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애 정도를 평가합니다.
-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 장애'라 함은 아래의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 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나)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경우
- 7)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조절 기능장애'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50세 이상(장애 진단 시 연령 기준)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8) '뚜렷한 시야 장애'라 함은 한 눈의 시야 범위가 정상시야 범위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시야검사는 공인된 시야검사방법으로 측정하며, 시야 장애 평가 시 자동시야검사계(골드만 시야검사)를 이용하여 8방향 시야 범위 합계를 정상 범위와 비교하여 평가합니다.
- 9)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10)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11)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안구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됩니다. 이 경우 안구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물(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합니다.
- 12)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애를 포함하여 장애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애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애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

## 2. 귀의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 45  |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 15  |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 5   |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 7) 평형기능에 장애를 남긴 때                         | 10  |

## 나. 장애판정 기준

- 1) 청력 장애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합니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pm 10$ dB 이상인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애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합니다.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3)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4)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 실시 후 장애를 평가합니다.

## 다. 귓바퀴의 결손

-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합니다.
- 2)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 장애로만 평가합니다.



라. 평형기능의 장애

- 1) '평형기능에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아래의 평형장애 평가항목별 합산 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항목      | 내용                                                     | 점수 |
|---------|--------------------------------------------------------|----|
| 검사 소견   | 1) 양측 전정 기능 소실                                         | 14 |
|         | 2) 양측 전정 기능 감소                                         | 10 |
|         | 3) 일측 전정 기능 소실                                         | 4  |
| 치료 병력   | 1) 장기 통원치료(1년간 12회 이상)                                 | 6  |
|         | 2) 장기 통원치료(1년간 6회 이상)                                  | 4  |
|         | 3)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 이상)                                 | 2  |
|         | 4)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 미만)                                 | 0  |
| 기능장애 소견 | 1)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는 경우 | 20 |
|         | 2)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우     | 12 |
|         | 3)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는 경우      | 8  |

- 2) 평형기능의 장애는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며, 뇌 병변 여부, 전정 기능 이상 및 장애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로 합니다.

가) 뇌영상검사(CT, MRI)

나) 온도 안진 검사, 전기 안진 검사(또는 비디오 안진 검사) 등

3. 코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
| 1) 코의 호흡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 2) 코의 후각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5   |

나. 장애판정 기준

- 1) '코의 호흡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 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 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2) '코의 후각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후각신경의 손상으로 양쪽 코의 후각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애의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 3) 양쪽 코의 후각 기능은 후각인지 검사, 후각역치 검사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고정된 후각의 완전 손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4) 코의 추상(추한 모습) 장애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애의 지급률과 추상장애의 지급률을 합산합니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애

가. 장애의 분류

|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
| 1) 씹어 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 100 |
| 2) 씹어 먹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 80  |
| 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 60  |
| 4) 씹어 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40  |
| 5) 씹어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20  |
| 6) 씹어 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 10  |
| 7) 씹어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 5   |
| 8)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 9)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 10)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나. 장애판정 기준

- 1) 씹어 먹는 기능의 장애는 윗니(상악 치아)와 아랫니(하악 치아)의 맞물림(교합), 배열 상태 및 아래턱의 개구 운동, 삼킴(연하) 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 2) '씹어 먹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심한 개구 운동 제한이나 저작운동 제한으로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3) '씹어 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합니다.
  - 가) 뚜렷한 개구 운동 제한 또는 뚜렷한 저작운동 제한으로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 간 최대 개구 운동이 1cm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5cm 이상인 경우
  - 라) 양측 1 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 마) 연하 기능 검사(비디오 투시 검사) 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시 흡인이 발생하고 연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 4) '씹어 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합니다.
  - 가) 약간의 개구 운동 제한 또는 약간의 저작운동 제한으로 부드러운 고형식(밥, 빵 등)만 섭취 가능한 경우
  -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 운동이 2cm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cm 이상인 경우
  - 라) 양측 각 1 개 또는 편측 2 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 마) 연하 기능 검사(비디오 투시 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시 간헐적으로 흡인이 발생하고 부드러운 고형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 5) 개구 장애는 턱관절의 이상으로 개구 운동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최대 개구 상태에서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 간 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가운데 앞니(중절치)가 없는 경우에는 측정 가능한 인접 치아간 거리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 6) 부정교합은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의 부조화로 윗니(상악 치아)와 아랫니(하악 치아)가 전방 및 측방으로 맞물림에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 7)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합니다.
  - 가) 언어평가상 자음 정확도가 30% 미만인 경우
  - 나) 전실어증, 운동성실어증(브로카실어증)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 8)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합니다.
  - 가) 언어평가상 자음 정확도가 50% 미만인 경우
  - 나) 언어평가상 표현 언어 지수 25 미만인 경우
- 9)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합니다.
  - 가) 언어평가상 자음 정확도가 75% 미만인 경우
  - 나) 언어평가상 표현 언어 지수 65 미만인 경우
- 10) 말하는 기능의 장애는 1 년 이상 지속적인 언어치료를 시행한 후 증상이 고착되었을 때 평가하며, 객관적인 검사를 기초로 평가합니다.
- 11) 뇌중추신경계 손상(정신인지 기능 저하, 편마비 등)으로 인한 말하는 기능의 장애(실어증, 구음 장애) 또는 씹어 먹는 기능의 장애는 신경계정신 행동 장애 평가와 비교하여 그중 높은 자급률 하나만 인정합니다.
- 12)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말하며, 치아의 일부 손상으로 금관 치료(크라운 보철 수복)를 시행한 경우에는 치아의 일부 결손을 인정하여 1/2 개 결손으로 적용합니다.
- 13) 보철치료를 위해 발치한 정상치아, 노화로 인해 자연 발치된 치아, 보철(복합레진, 인레이, 온레이 등)한 치아, 기존 의치(틀니, 임플란트 등)의 결손은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14)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 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15) 어린이의 유치는 향후에 영구치로 대체되므로 장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선천적으로 영구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의 결손을 장애로 평가합니다.
- 16) 가철성 보철물(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틀니 등)의 파손은 장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 나. 장애판정 기준

-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합니다.
- 2) '추상(추한 모습) 장애'라 함은 성형수술(반흔 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합니다.
-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4) 다발성 반흔 발생 시 각 판정 부위(얼굴, 머리, 목) 내의 다발성 반흔의 길이 또는 면적은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단, 길이가 5mm 미만의 반흔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5) 추상(추한 모습)이 얼굴과 머리 또는 목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1/2을 얼굴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보아 산정합니다.

###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나)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다) 지름 5cm 이상의 조직 함몰
  - 라) 코의 1/2 이상 결손
- 2) 머리
  - 가)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 결손
  -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 가)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가)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나) 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다) 지름 2cm 이상의 조직 함몰
  - 라) 코의 1/4 이상 결손
- 2) 머리
  -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 결손
  -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 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 cm(1/2 크기는 40 cm<sup>2</sup>, 1/4 크기는 20 cm<sup>2</sup>), 6~11 세의 경우는 6×8 cm(1/2 크기는 24 cm<sup>2</sup>, 1/4 크기는 12 cm<sup>2</sup>), 6 세 미만의 경우는 4×6 cm(1/2 크기는 12 cm<sup>2</sup>, 1/4 크기는 6 cm<sup>2</sup>)로 간주합니다.

## 6. 척추(등뼈)의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 장애를 남긴 때  | 40  |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 장애를 남긴 때 | 30  |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 장애를 남긴 때 | 10  |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 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애    | 20  |
| 8)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애   | 15  |
| 9)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애   | 10  |

### 나. 장애판정 기준

- 1)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 1 천추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합니다. 제 2 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의 장애로 평가합니다.
- 2) 척추(등뼈)의 기형 장애는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말하며, 횡돌기 및 극돌기는 제외합니다. 이하 이 신체 부위에서 같습니다)의 압박률 또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 정도에 따라 평가합니다.
  -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 변화는 객관적인 측정 방법(Cobb's Angle)에 따라 골절이 발생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상·하 인접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생리적 정상 만곡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 나) 척추(등뼈)의 기형 장애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등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은 인접 상·하부[인접 상·하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척추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골절된 척추와 가장 인접한 상·하부]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척추체(척추뼈 몸통) 전방 높이의 감소비를 압박률로 정합니다.
  - 다) 척추(등뼈)의 기형 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 구분하여 각각을 하나의 운동단위로 보며, 하나의 운동단위 내에서 여러 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을 합산하고, 두 개 이상의 운동단위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3) 척추(등뼈)의 장애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합니다.
- 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애는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 개월 이상 지난 후에 평가합니다.
- 5) 신경학적 검사상 나타난 저린감이나 방사통 등 신경자극 증상의 원인으로 CT, MRI 등 영상검사상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경우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며,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 장애 및 기형 장애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 6) 심한 운동 장애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 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된 상태
  - 나) 머리뼈(두개골), 제 1 경추, 제 2 경추를 모두 유합 또는 고정된 상태
- 7) 뚜렷한 운동 장애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 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된 상태
  - 나) 머리뼈(두개골)와 제 1 경추 또는 제 1 경추와 제 2 경추를 유합 또는 고정된 상태
  - 다) 머리뼈(두개골)와 상위 목뼈(상위 경추: 제 1, 2 경추) 사이에 CT 검사상, 두개 대후두공의 기저점(basion)과 축추 치돌기 상단 사이의 거리(BDI : Basion-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 전위가 있는 상태
  - 라) 상위 목뼈(상위 경추: 제 1, 2 경추) CT 검사상, 환추 전방 궁(arch)의 후방과 치상돌기의 전면과의 거리(ADI: Atlanto-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 전위가 있는 상태
- 8) 약간의 운동 장애
 

머리뼈(두개골)와 상위 목뼈(상위 경추: 제 1, 2 경추)를 제외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 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된 상태
- 9) 심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60% 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 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90% 이상일 때
- 10) 뚜렷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40% 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60% 이상일 때
- 11) 약간의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가) 1 개 이상의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20% 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 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40% 이상일 때
- 12)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애'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을 2 마디 이상(또는 1 마디 추간판에 대해 2 회 이상) 수술하고도 마미신경 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애가 있는 경우
- 13)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애'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 1 마디를 수술하고도 신경 생리 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 병증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 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1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애'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 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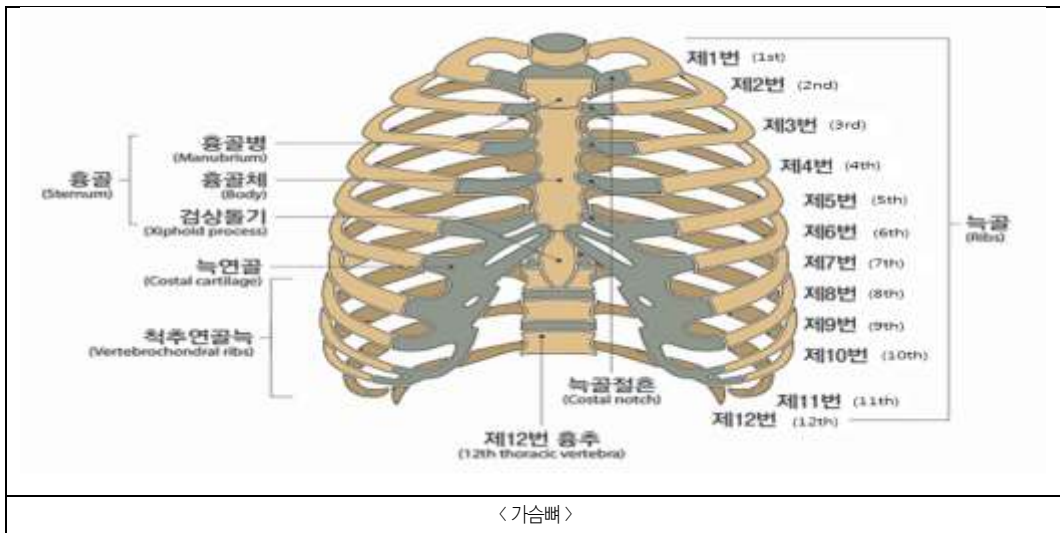
## 7. 체간골의 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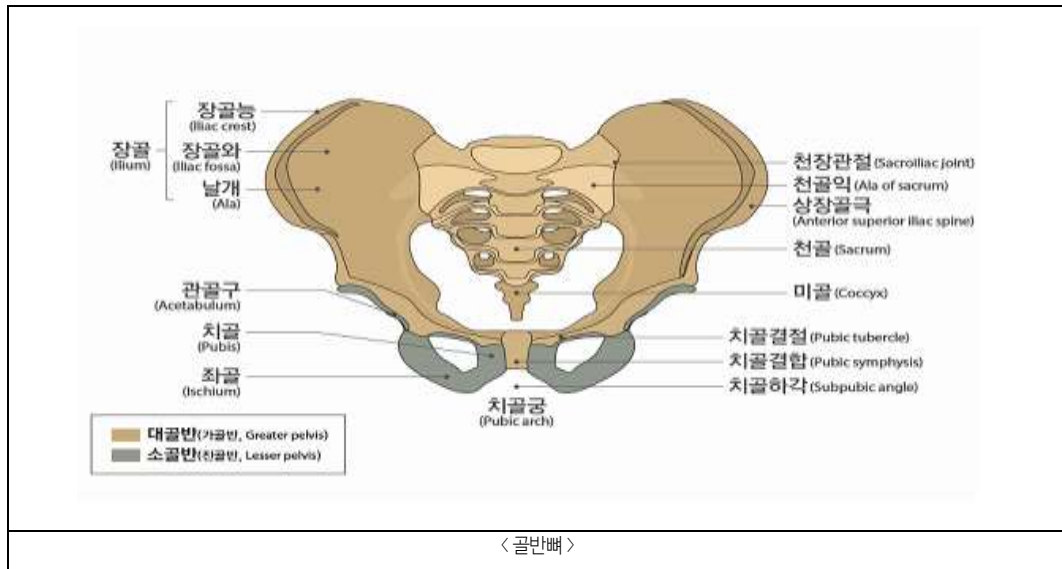
### 가. 장애의 분류

|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
| 1)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 2 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
| 2)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0  |

### 나. 장애판정 기준

-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 2 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봅니다.
-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합니다.
-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 나) 육안으로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 다) 미골의 기형은 골절이나 탈구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된 각(角) 변형이 70° 이상 남은 상태
- 3)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 어깨뼈(견갑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 라 함은 방사선 검사로 측정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4) 갈비뼈(늑골)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애로 취급합니다. 다발성 늑골 기형의 경우 각각의 각(角) 변형을 합산하지 않고 그중 가장 높은 각(角) 변형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8. 팔의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
|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60  |
|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 20  |
|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10  |
|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 5   |
|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20  |
|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 10  |
|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 나. 장애판정 기준

- 골절부에 금속 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애를 평가합니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애를 평가합니다.
-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애(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장애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 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합니다.
-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 관절(주관절), 손목 관절(완관절)을 말합니다.
-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 관절(완관절)부터(손목 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 팔의 관절 기능장애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 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합니다.
  - 가) 각 관절의 운동 범위 측정은 장애 평가 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 47 조 제 1 항 및 제 3 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 가능 영역을 기준으로 정상 각도 및 측정 방법 등을 따릅니다.
  - 나) 관절 기능장애를 표시할 경우 장애부위의 장애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애상태를 명확히 합니다. 단, 관절 기능장애가 신경 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 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 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 검사(MMT)에서 근력이 '0 등급(zero)'인 경우
-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 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다) 근전도 검사상 완전 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 검사(MMT)에서 근력이 '1 등급(trace)'인 경우
-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 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 검사(MMT)에서 근력이 '2 등급(poor)'인 경우
-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합니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 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 검사(MMT)에서 근력이 '3 등급(fair)'인 경우
- 11) '가관절<sup>※</sup>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합니다.
-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합니다.
- 12)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합니다.
- 13)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다. 지급률의 결정
-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합니다.
- 2) 1 상지(팔과 손가락)의 장애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합니다.

## 9. 다리의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
|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60  |
|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 20  |
|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10  |
|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 5   |
|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20  |
|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 10  |
|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30  |
|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15  |
|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5   |

### 나. 장애판정 기준

- 1) 골절부에 금속 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애를 평가합니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애를 평가합니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애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 3) '다리'라 함은 엉덩이 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합니다.
-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엉덩이 관절(고관절), 무릎관절(슬관절), 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합니다.
- 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 절단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 6) 다리의 관절 기능장해 평가는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 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합니다.
- 가) 각 관절의 운동 범위 측정은 장애 평가 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 47 조 제 1 항 및 제 3 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 가능 영역을 기준으로 정상 각도 및 측정 방법 등을 따릅니다.
- 나) 관절 기능장해가 신경 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 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합니다.
-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 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 검사(MMT)에서 근력이 '0 등급(zero)'인 경우

-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합니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 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다)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라) 근전도 검사상 완전 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 검사(MMT)에서 근력이 '1 등급(trace)'인 경우
-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합니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 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 검사(MMT)에서 근력이 '2 등급(poor)'인 경우
-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합니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 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 검사(MMT)에서 근력이 '3 등급(fair)'인 경우
- 11) 동요 장애 평가 시에는 정상 측과 환 측을 비교하여 증가된 수치로 평가합니다.
- 12) '가관절<sup>\*)</sup>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합니다.
-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합니다.
- 13)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합니다.
- 14)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15) 다리 길이의 단축 또는 과신장은 스캐노그램(scanogram)을 통하여 측정합니다.

#### 다. 지급률의 결정

- 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합니다.
- 2) 1 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합니다.

### 10. 손가락의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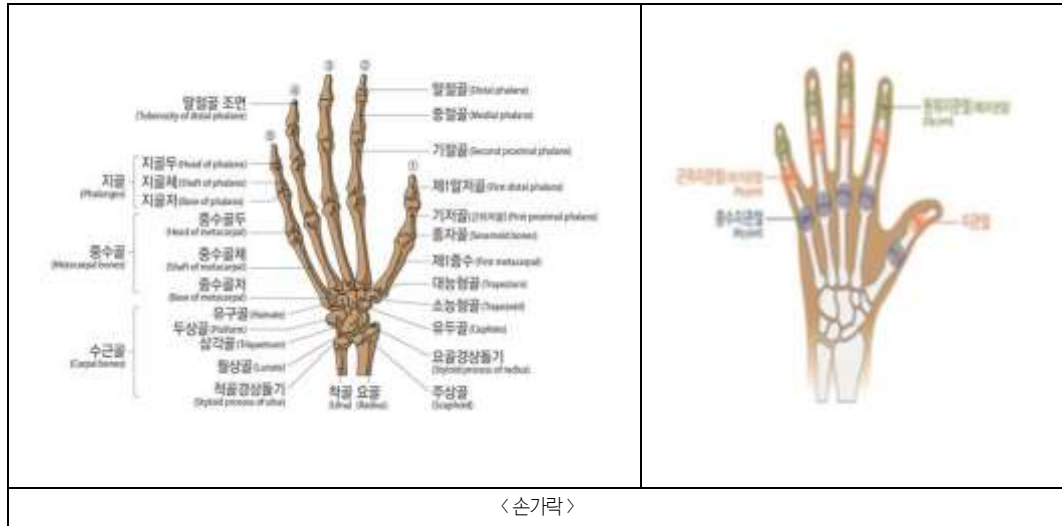
|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
|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마다)                          | 10  |
|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30  |
|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10  |
|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 5   |

#### 나. 장애판정 기준

- 1) 골절부에 금속 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애를 평가합니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애를 평가합니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 관절이 있습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 관절, 지관절이라 합니다.
-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 관절이 있습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 관절, 제 1 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 2 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릅니다.
-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 1 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 1 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 1 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7) '손가락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우 중수지 관절 또는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 가능 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 1, 제 2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 8) 한 손가락에 장애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합니다.
- 9) 손가락의 관절 기능장애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 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합니다. 각 관절의 운동 범위 측정은 장애 평가 시점의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 47 조 제 1 항 및 제 3 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 가능 영역을 기준으로 정상 각도 및 측정 방법 등을 따릅니다.



## 11. 발가락의 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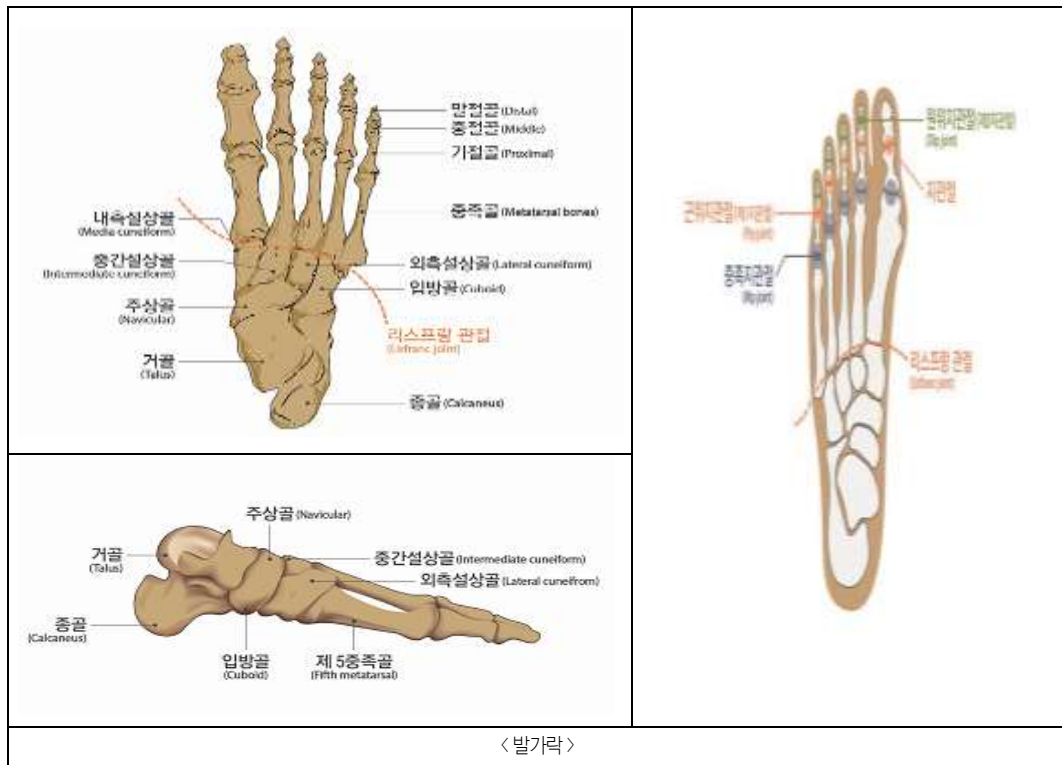
### 가. 장애의 분류

|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
|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 2) 한 발의 5 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 5   |
| 5) 한 발의 5 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20  |
|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8   |
|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 3   |

### 나. 장애판정 기준

- 1) 골절부에 금속 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애를 평가합니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애를 평가합니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애(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장애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 3)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 1 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 1 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합니다.
- 4)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 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합니다.
- 5)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서는 제 1 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발가락뼈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6) '발가락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 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 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가능 영역의 1/2 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합니다.
- 7) 한 발가락에 장애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합니다.

8) 발가락 관절의 운동 범위 측정은 장해 평가 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 47 조 제 1 항 및 제 3 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 가능 영역을 기준으로 정상 각도 및 측정 방법 등을 따릅니다.



##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 100 |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 75  |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50  |
|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30  |
|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5  |

### 나. 장해의 판정 기준

-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심장 이식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합니다.
  - 가)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 나)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 다) 방광의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때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합니다.
  - 가) 위, 대장(결장~직장) 또는 췌장,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 나) 소장 3/4 이상 잘라내었을 때 또는 잘라낸 소장의 길이가 3m 이상일 때
  - 다)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 라)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합니다.
  - 가) 한쪽 폐 또는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내었을 때
  - 나) 방광 기능 상실로 영구적인 요도로, 방광루, 요관 장문합 상태
  - 다) 위, 췌장을 50% 이상 잘라내었을 때

- 라) 대장 절제, 항문 괄약근 등의 기능장애로 영구적으로 장루,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마) 심장기능 이상으로 인공심박동기를 영구적으로 삽입한 경우
- 바) 요도 괄약근 등의 기능장애로 영구적으로 인공요도 괄약근을 설치한 경우
- 5) '홍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합니다.
- 가)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 배뇨기능 상실로 영구적인 간헐적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 나)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 다) 폐 질환 또는 폐 부분 절제술 후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으로 지속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하며, 폐기능 검사(PFT)상 폐환기 기능(1 초간 노력성 호기량, FEV1)이 정상 예측치의 40% 이하로 저하된 때
- 6) 홍복부, 비뇨 생식기계 장애는 질병 또는 외상의 직접 결과로 인한 장애를 말하며, 노화에 의한 기능장애 또는 질병이나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적으로 장기를 절제, 적출한 경우는 장애로 보지 않습니다.
- 7) 상기 홍복부 및 비뇨 생식기계 장애 항목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장애상태에 대해서는 '불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 평가표'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을 때 ADLs 장애지급률을 준용합니다.
- 8) 상기 장애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 간질환,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은 장애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13. 신경계·정신행동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
| 1) 신경계에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 10~100 |
|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애를 남긴 때              | 100    |
| 3) 정신행동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 75     |
|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50     |
| 5)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 25     |
| 6)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애를 남긴 때              | 10     |
| 7)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 점             | 100    |
| 8) 심한 치매 : CDR 척도 4 점              | 80     |
| 9)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 점             | 60     |
| 10)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 점            | 40     |
| 11)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70     |
| 12)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40     |
| 13)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     |

#### 나. 장애판정 기준

##### 1) 신경계

- 가) '신경계에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불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 평가표'의 5 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 나) 위 가)의 경우 '불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 평가표' 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 대상이 되는 장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 신경계의 장애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 부위의 장애(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애로도 평가하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 라)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12 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 개월의 범위에서 장애 평가를 유보합니다.
- 마) 장애 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합니다.

##### 2) 정신행동

- 가) 정신행동 장애는 보행기간 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 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질병 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질병 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 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나) 정신행동 장애는 장애판정 직전 1 년 이상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와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다)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장애판정 직전 1 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와 치료를 받았으며 GAF 30 점 이하인 상태를 말합니다.

라) '정신행동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와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40 점 이하인 상태를 말합니다.

마)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와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 판정 기준」의 '능력 장애측정 기준'상 6개 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50 점 이하인 상태를 말합니다.

※ 주) 능력 장애측정 기준의 항목 : ㉠ 적절한 음식 섭취, ㉡ 대소변 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 ㉢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 규칙적인 통원·약물 복용, ㉤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 대중교통이나 일반 공공시설의 이용

바)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와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 판정 기준」의 '능력 장애측정 기준'상 6개 항목 중 2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60 점 이하인 상태를 말합니다.

사)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와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 판정 기준」의 '능력 장애측정 기준'상 6개 항목 중 2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70 점 이하인 상태를 말합니다.

아)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와의 치료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자)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차) 정신행동 장애 진단 전문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합니다.

카) 정신행동 장애는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 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 촬영, 뇌파 등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평가합니다. 다만,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감정의 추정 혹은 인정, 한국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 SPECT 등)은 객관적 근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타) 각종 기질성 정신 장애와 외상 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조현병), 편집증, 조울증(양극성 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3) 치매

가) '치매'라 함은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질병이나 외상 후 기질성 손상으로 파괴되어 한번 획득한 지적기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말합니다.

나) 치매의 장애 평가는 임상적인 증상뿐 아니라 뇌영상검사(CT 및 MRI, SPECT 등)를 기초로 진단되어야 하며,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합니다. 다만, 진단 시점에 이미 극심한 치매 또는 심한 치매로 진행된 경우에는 6개월간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합니다.

다) 치매의 장애평가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에 의한 임상 치매 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 결과에 따릅니다.

#### 4) 뇌전증(간질)

가) '뇌전증(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 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 장애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간질발작의 빈도 및 양상은 지속적인 항간질제(항전간제) 약물로도 조절되지 않는 간질을 말하며,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간질발작의 빈도 및 양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심한 간질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 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 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라) '뚜렷한 간질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 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 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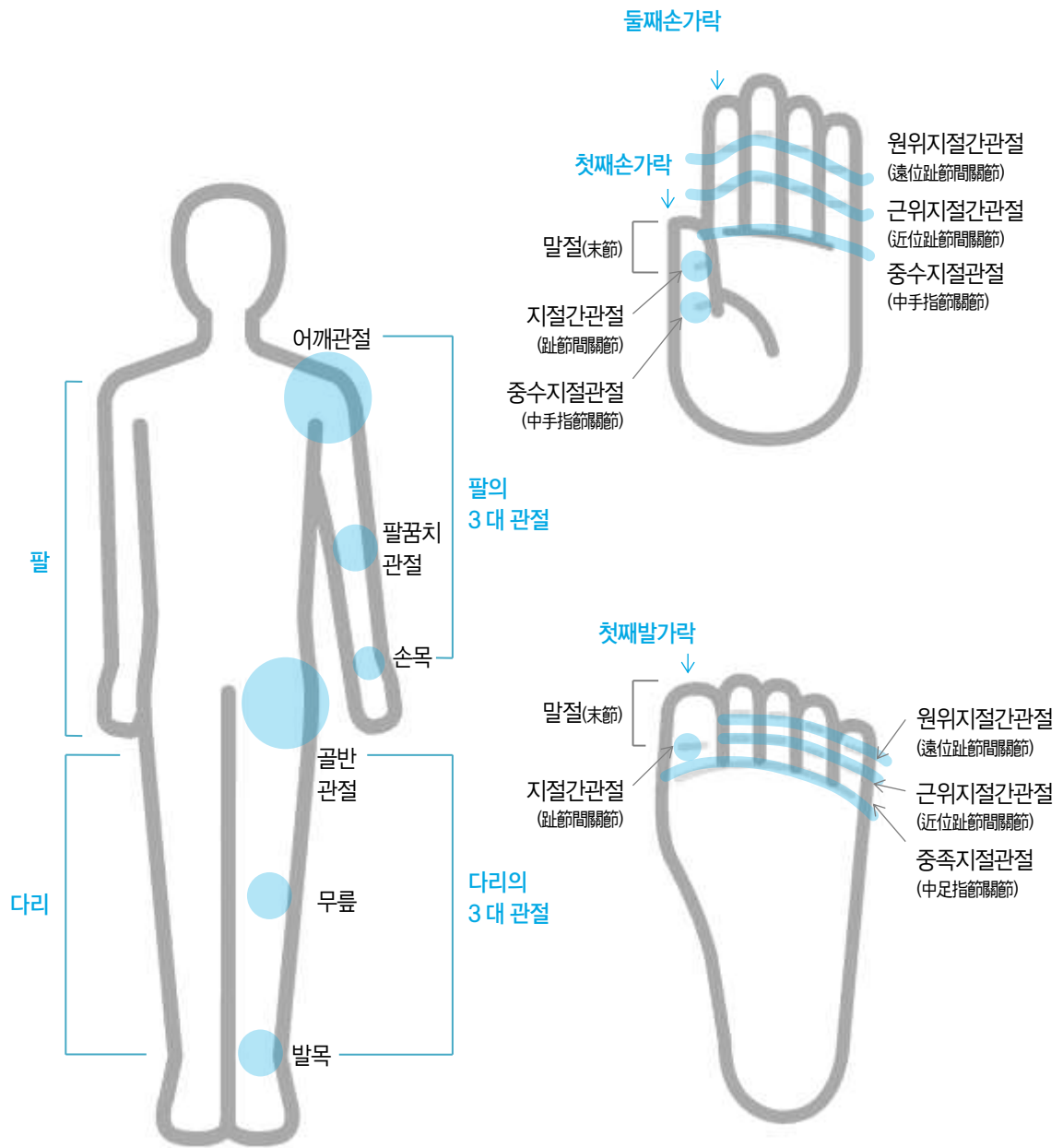
마) '약간의 간질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 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 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 '중증 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 장애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합니다.

사) '경증 발작'이라 함은 운동 장애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합니다.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 평가표

| 유형      |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
|---------|------------------------------------------------------------------------------------------------------------------------------------------------------------------------------------------------------------------------------------------------------------------------------------------------------------------------------------------------------------------------------------------------------------------------------------------------------------------------------------|
| 이동동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동 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40%)</li> <li>-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가능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30%)</li> <li>-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li> <li>-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절뚝거림)이 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또는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li> </ul>                                  |
| 음식물 섭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비위관 또는 위루관)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li> <li>-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li> <li>-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li> <li>-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li> </ul>                                                                                                                             |
| 배변 배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수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도뇨관 삽입 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루상태(20%)</li> <li>- 화장실에 가서 변기 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뒤처리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 도뇨가 가능한 상태(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 배변 상태(15%)</li> <li>-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li> <li>-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 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또는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때(5%)</li> </ul> |
| 목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0%)</li> <li>- 세안, 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5%)</li> <li>- 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3%)</li> </ul>                                                                                                                                                                                                                         |
| 옷 입고 벗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 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0%)</li> <li>- 상, 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 혼자서 착탈의가 가능한 상태(5%)</li> <li>- 상, 하의 의복 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미세 동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이 필요한 마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3%)</li> </ul>                                                                                                                                                                                           |



**1. 이 보험에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 가.운행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 나.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 다.도로 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2. 제 1 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 가.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
- 나.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터,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
- 다.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등

**3. 제 2 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재해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재해로 봅니다.****4. 제 1 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재해로 보지 않습니다.****5. 이 표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합니다)로서 터널, 교량, 도선시설 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승객으로써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서, 다음에 정하는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 가.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나. 피보험자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다.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2. 제 1 호에서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승용구를 말합니다.

- 가. 여객수송용 항공기
- 나.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 7 조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 규정한 것 중
  - ① 시내버스 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② 시외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③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④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단, 전세버스 및 셔틀버스는 제외합니다.
- 라. 여객수송용 여객선

3. 제 1 호에서 “승객”이라 함은 이동을 목적으로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는 사람을 말하며, 해당 대중교통수단 종사자로서 업무목적으로 탑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4. 제 1 호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운행중인 교통수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를 말합니다.



**별표 6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 이율 계산(제 8 조 제 2 항 및 제 32 조 제 2 항 관련)**

| 구 분                                                                       | 적립 기간                            | 적립 이율                                |
|---------------------------------------------------------------------------|----------------------------------|--------------------------------------|
| 재해사망보험금<br>(제 3 조 제 1 호에서 제 3 호)<br>및<br>재해장해보험금<br>(제 3 조 제 4 호 및 제 5 호)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 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 지급기일의 31 일 이후부터 60 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4.0%)                  |
|                                                                           | 지급기일의 61 일 이후부터 90 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6.0%)                  |
|                                                                           | 지급기일의 91 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8.0%)                  |
| 해지환급금<br>(제 32 조 제 1 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br>청구일까지의 기간 | 1 년 이내 : 평균공시이율의 50%<br>1 년초과기간 : 1% |
|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소멸시효(제 37 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 시 제 8 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 3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 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약관

※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이 있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제 1 조 [특약의 적용범위 등]

① 이 특약은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청약(講約)하고 보험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특약을 포함하며, 이하 “전환대상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 59 조의 4(특별세액공제) 제 1 항 제 1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보험(이하 “장애인전용보험”이라 합니다)으로 전환을 청약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1. 「소득세법 제 59 조의 4(특별세액공제) 제 1 항 제 2 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 용어 해설

##### 〈소득세법 제 59 조의 4(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 분의 12(제 1 호의 경우에는 100 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 1 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8 조의 4 (보험료의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 59 조의 4 제 1 항제 1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 2 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 · 공제로서 보험 · 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 · 공제로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 · 공제로 표시된 보험 · 공제의 보험료 · 공제료를 말한다.

② 소득세법 제 59 조의 4 제 1 항제 2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 · 보증 · 공제의 보험료 · 보증료 · 공제로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 · 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5.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 보증.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61 조의 3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8 조의 4 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2. 주계약(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든 부가특약을 포함하며, 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의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 조(장애인의 범위) 제 1 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다만,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 등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 조(장애인의 범위) 제 1 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                                                                                                                                                                                                                                                                                                                                                                                                                                                                                                                                        |
|------------------|----------------------------------------------------------------------------------------------------------------------------------------------------------------------------------------------------------------------------------------------------------------------------------------------------------------------------------------------------------------------------------------------------------------------------------------------------------------------------------------------------------------------------------------|
| <b>용어<br/>해설</b> | <p><b>〈「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 조(장애인의 범위)」에서 규정한 장애인〉</b></p> <p>① 소득세법 제 51 조 제 1 항 제 2 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li> <li>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li> <li>3. 삭제</li> <li>4. 제 1 호 및 제 2 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li> </ol> <p><b>〈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54 조(장애아동의 범위)〉</b></p> <p>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 조제 1 항제 1 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 21 조제 1 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p> |
|------------------|----------------------------------------------------------------------------------------------------------------------------------------------------------------------------------------------------------------------------------------------------------------------------------------------------------------------------------------------------------------------------------------------------------------------------------------------------------------------------------------------------------------------------------------|

|           |                                                                                                                                                                                                                                                                                                                                                                                                                                                          |
|-----------|----------------------------------------------------------------------------------------------------------------------------------------------------------------------------------------------------------------------------------------------------------------------------------------------------------------------------------------------------------------------------------------------------------------------------------------------------------|
| <b>설명</b> | <p><b>〈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1〉</b></p> <p>주계약의 피보험자 1 인은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 2 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모든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p> <p><b>〈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2〉</b></p> <p>주계약의 보험수익자 1 인은 비장애인이고 피보험자 2 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모든 피보험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p> <p><b>〈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3〉</b></p> <p>주계약의 피보험자는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경우, 현재 법정상속인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전환보험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보험수익자 지정이 필요 합니다.</p> |
|-----------|----------------------------------------------------------------------------------------------------------------------------------------------------------------------------------------------------------------------------------------------------------------------------------------------------------------------------------------------------------------------------------------------------------------------------------------------------------|

② 이 특약의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의 계약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 제 2 조[제출서류]

- ① 이 특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주계약의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38 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 1 조(특약의 적용범위 등) 제 1 항 제 2 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傷痍者)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③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 1 항에 따라 회사에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④ 제 1 항에 따라 제출한 장애인증명서의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자는 이를 회사에 알리고 변경된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 3 조[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 ① 회사는 이 특약이 부가된 전환대상계약을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2 조(제출서류) 제 1 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③ 「전환대상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이 없게 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 1 조(특약의 적용범위 등) 제 1 항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④ 제 1 항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후부터 납입된 전환대상계약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됩니다.

|           |                                                                                                                                                                                                                                                    |
|-----------|----------------------------------------------------------------------------------------------------------------------------------------------------------------------------------------------------------------------------------------------------|
| <b>설명</b> | 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년 6월 1일에 이 특약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경우,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되기 전(2019년 1월 15일~2019년 5월 31일)에 납입된 전환대상계약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으며,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전환대상계약 보험료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됩니다. |
|-----------|----------------------------------------------------------------------------------------------------------------------------------------------------------------------------------------------------------------------------------------------------|

- ⑤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당해년도에 전환대상계약이 제 1 조(특약의 적용범위) 제 1 항 제 2 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당해년도에 제 4 조(전환 해지)에 따라 전환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납입한 모든 전환대상계약 보험료가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 2 조(제출서류) 제 1 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당해년도에 전환대상계약이 제 1 조(특약의 적용범위) 제 1 항 제 2 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후부터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납입된 전환대상계약 보험료가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됩니다.

|           |                                                                                                                                                                                                                                                                                                                                                    |
|-----------|----------------------------------------------------------------------------------------------------------------------------------------------------------------------------------------------------------------------------------------------------------------------------------------------------------------------------------------------------|
| <b>설명</b> | 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년 6월 1일에 이 특약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되었으나 소득세법상 장애인증명서에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2019년 12월 1일까지 인 경우,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부터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지나기 전까지(2019년 6월 1일 ~ 2019년 12월 1일) 납입된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됩니다.<br>그러나,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지난 후 납입된 전환대상계약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
|-----------|----------------------------------------------------------------------------------------------------------------------------------------------------------------------------------------------------------------------------------------------------------------------------------------------------------------------------------------------------|

- ⑥ 이 특약이 부가된 이후 「제 4 조(전환 해지)에 따라 전환을 해지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 1 조(특약의 적용범위 등) 제 1 항 제 2 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이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전환대상계약에 이 특약을 다시 부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 2 조(제출서류) 제 1 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제 1 조(특약의 적용범위 등) 제 1 항 제 2 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을 다시 부가할 수 있습니다.

### 제 4 조[전환 해지]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환해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 5 조[준용규정]

-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대상계약 약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 이 특약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자가 미리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변경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자가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 1 조 [적용 대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 이하) 이하)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 제 2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② 제 1 조(적용대상)의 주계약 및 특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 2 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제 3 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변경지정) 및 자격]

- ① 계약자는 보험수익자가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보험수익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를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제 1 항의 지정대리청구인은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또는 「3촌이내 친족」 중 1명으로 합니다.
- ③ 보험금 청구 시에 지정대리청구인이 제 2 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 ④ 계약자는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할 경우 다음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지정(변경지정) 신청서(회사양식)  
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주계약 청약서에 포함된 신청양식으로 대체합니다.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등)
  3. 계약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이하 "신분증"이라 합니다)
- ⑤ 계약체결 이후 계약자 본인이 아닌 자가 계약자를 대리하여 제 1 항에서 제 4 항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신청을 하는 경우(이하,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의 대리신청"이라 합니다) 계약자가 작성한 제 4 항 제 1 호의 지정대리청구인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및 제 4 항 제 2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의 대리신청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계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계약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 ⑥ 제 1 항에서 제 5 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 또는 변경지정된 이후에 제 1 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 또는 변경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⑦ 제 1 항에서 제 5 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 또는 특약 약관에서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기간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 계약자는 이 특약에서도 그 기간에 한하여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할 수 있습니다.

###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

#### 제 4 조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등)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 5 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 4 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구비서류 및 제 1 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 1 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 4 관 기타사항

#### 제 6 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약관

※ 이 특약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이 있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경우 적용하거나, 이미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등으로 회사가 보장을 제한할 경우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계약(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약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의 청약(講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② 또한, 이미 주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등으로 회사가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도,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이 특약을 부가하여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약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특약 부가에 따라 주계약에서 보장이 제한되는 범위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입증된 경우 혹은 경험통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유의성 있게 입증된 경우 등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신체부위 혹은 질병 등으로 제한하며,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 회사는 보장이 제한되는 범위 및 사유를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④ 이 특약을 2인(3인, 多人)보장보험에 부가할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중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로 합니다.
- ⑤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일]과 같습니다. 또한, 제 2 항에 따라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일]로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 ⑥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 또는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⑦ 주계약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1. 이 특약 제 2 조(특약면책조건의 내용) 제 1 항 제 1 호에서 정한 특정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면책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신체부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이 특약 제 2 조(특약면책조건의 내용) 제 1 항 제 2 호에서 정한 특정질병에 대하여 면책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질병이 발생한 경우

### 제 2 조 [특약면책조건의 내용]

- ① 이 특약에서 정한 면책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1. 별표 1 “특정신체부위분류표”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부위(이하 “특정신체부위”라 합니다)에 발생한 질병 또는 특정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신체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
  2. 별표 2 “특정질병분류표”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질병(이하 “특정질병”이라 합니다)
- ② 제 1 항의 면책기간은 특정신체부위 또는 특정질병의 상태에 따라 「1 년부터 5 년」 또는 「주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단, 계약자가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없는 한 별도의 인수심사 없이 갱신되는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에서 「면책기간」의 산정은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며, 「주계약의 보험기간」은

최초 계약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또한 그 판단 기준은 회사의 계약인수기준을 따르며,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
|------------------|-----------------------------------------------------------------------------|
| <b>용어<br/>해설</b> | <b>〈계약인수기준〉</b><br>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직업, 건강, 재정 상태 등 보험가입에 대한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
|------------------|-----------------------------------------------------------------------------|

③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제 1 항 제 1 호에서 지정한 특정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특정신체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으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단, 전이는 합병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제 1 항 제 2 호에서 지정한 특정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특정질병 이외의 질병으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재해(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 년이 지나는 동안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에서 지정한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청약일부터 5 년이 지난 이후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에서 정한 질병으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④ 제 3 항 제 4 호의 “청약일 이후 5 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주계약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⑤ 제 3 조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 3 항 및 제 4 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회사가 정한 면책기간의 종료일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그 입원에 대해서는 면책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을 입원의 개시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특정질병 또는 특정신체부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의사의 진단서와 의견을 주된 판단자료로 결정합니다.
- ⑧ 제 1 항의 특정신체부위 및 특정질병은 4 개 이내에서 선택하여 부가 할 수 있습니다.

### 제 3 조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 1 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 5 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제 4 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특정신체부위 분류표

| 분류번호 | 특정신체부위의 명칭                                             |
|------|--------------------------------------------------------|
| 49   | 위, 십이지장                                                |
| 50   | 공장(빈창자), 회장(돌창자), 맹장(충수돌기 포함)                          |
| 51   | 대장(맹장, 직장 제외)                                          |
| 52   | 직장                                                     |
| 53   | 항문                                                     |
| 54   | 간                                                      |
| 55   | 담낭(쓸개) 및 담관                                            |
| 56   | 췌장                                                     |
| 57   | 비장                                                     |
| 58   | 기관, 기관지, 폐, 흉막 및 흉곽(늑골 포함)                             |
| 59   | 코외비(코 바깥), 비강(코 안) 및 부비강(코 곁굴) 포함]                     |
| 60   | 인두 및 후두(편도 포함)                                         |
| 61   | 식도                                                     |
| 62   | 구강, 치아, 혀, 악하선(턱밑샘), 이하선(귀밑샘) 및 설하선(혀밑샘)               |
| 63   | 귀[외이(바깥 귀), 고막, 중이(가운데귀), 내이(속귀), 청신경 및 유양돌기(꼭지돌기) 포함] |
| 64   | 안구 및 안구부속기[안검(눈꺼풀), 결막, 누기(눈물샘), 안근 및 안와내 조직 포함]       |
| 65   | 신장                                                     |
| 66   | 부신                                                     |
| 67   | 요관, 방광 및 요도                                            |
| 68   | 음경                                                     |
| 69   | 질 및 외음부                                                |
| 70   | 전립선                                                    |
| 71   | 유방(유선 포함)                                              |
| 72   | 자궁[자궁체부(자궁몸통) 포함]                                      |
| 73   | 자궁체부(자궁몸통)(제왕절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함)                           |
| 74   | 난소 및 난관                                                |
| 75   | 고환[고환초막(고환집막) 포함] 부고환, 정관, 정삭 및 정낭                     |
| 76   | 갑상선                                                    |
| 77   | 부갑상선                                                   |
| 78   | 서혜부(넓적다리 부위의 위쪽 주변)(서혜 탈장, 음낭 탈장 또는 대퇴 탈장이 생긴 경우에 한함)  |
| 79   | 피부(두피 및 입술 포함)                                         |
| 80   | 경추부(해당신경 포함)                                           |
| 81   | 흉추부(해당신경 포함)                                           |
| 82   | 요추부(해당신경 포함)                                           |
| 83   | 천골(엉치뼈)부 및 미골(꼬리뼈)부(해당신경 포함)                           |
| 84   | 왼쪽 어깨                                                  |
| 85   | 오른쪽 어깨                                                 |
| 86   | 왼팔(왼쪽 어깨 제외, 왼손 포함)                                    |
| 87   | 오른팔(오른쪽 어깨 제외, 오른손 포함)                                 |
| 88   | 왼손(왼쪽 손목 관절 이하)                                        |
| 89   | 오른손(오른쪽 손목 관절 이하)                                      |
| 90   | 왼쪽 고관절                                                 |
| 91   | 오른쪽 고관절                                                |
| 92   | 왼쪽 다리(왼쪽 고관절 제외, 왼발 포함)                                |
| 93   | 오른쪽 다리(오른쪽 고관절 제외, 오른발 포함)                             |
| 94   | 왼발(왼쪽 발목 관절 이하)                                        |
| 95   | 오른발(오른쪽 발목 관절 이하)                                      |
| 96   | 상·하악골(위턱뼈·아래턱뼈)                                        |
| 97   | 쇄골                                                     |
| 98   | 늑골(갈비뼈)                                                |

별표 2

## 특정질병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 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진단 시점에 시행 중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적용합니다.

| NO | 대상질병  | 분류번호 |                                  |
|----|-------|------|----------------------------------|
| 40 | 담석증   | K80  | 담석증                              |
| 41 | 요로결석증 | N20  | 신장 및 요관의 결석                      |
|    |       | N21  | 하부요로의 결석                         |
|    |       | N22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요로의 결석              |
| 42 | 임신중독증 | O11  |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
|    |       | O12  | 고혈압을 동반하지 않은 임신성[임신-유발] 부종 및 단백뇨 |
|    |       | O13  | 임신[임신-유발] 고혈압                    |
|    |       | O14  | 전자간                              |
|    |       | O15  | 자간                               |
| 43 | 관절증   | M05  |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
|    |       | M06  | 기타 류마티스관절염                       |
|    |       | M08  | 연소성 관절염                          |
|    |       | M15  | 다발관절증                            |
|    |       | M16  | 고관절증                             |
|    |       | M17  | 무릎관절증                            |
|    |       | M18  | 제 1 수근중수관절의 관절증                  |
|    |       | M19  | 기타 관절증                           |
| 44 | 등병증   | M40  | 척주후만증 및 척주전만증                    |
|    |       | M41  | 척주측만증                            |
| 46 | 골반염   | N73  | 기타 여성골반염증질환                      |
|    |       | N74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여성골반염증장애            |
| 47 | 자궁내막증 | N80  | 자궁내막증                            |
| 48 | 자궁근종  | D25  | 자궁의 평활근종                         |

(※) 제 9 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진단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적용합니다.

|           |                                                                                                                                                                                                                                                                                                                                                                                                                |
|-----------|----------------------------------------------------------------------------------------------------------------------------------------------------------------------------------------------------------------------------------------------------------------------------------------------------------------------------------------------------------------------------------------------------------------|
| <b>설명</b> | <p>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적용할 때,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진단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진단 당시에 시행 중인 제9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적용할 때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이 아닌 경우에는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p> <p>반대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적용할 때,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진단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진단 당시에 시행 중인 제9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적용할 때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인 경우에는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봅니다.</p> |
|-----------|----------------------------------------------------------------------------------------------------------------------------------------------------------------------------------------------------------------------------------------------------------------------------------------------------------------------------------------------------------------------------------------------------------------|

② 진단시점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 인지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진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추가 또는 제외되더라도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 인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                                                                                                                                                                                             |
|-----------|---------------------------------------------------------------------------------------------------------------------------------------------------------------------------------------------|
| <b>설명</b> | <p>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적용하여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진단될 수 없었다면, 진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어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볼 수 있어 재진단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p> |
|-----------|---------------------------------------------------------------------------------------------------------------------------------------------------------------------------------------------|

### 별표 3 재해분류표

주계약 약관의 해당 분류표와 동일

- 아래 법령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인용된 법령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아래 법령은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해당 법령의 제·개정으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아래 법령과 실제 법령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법령 내용을 적용합니다.

- 또한, 아래 방법으로 현행 법령과 제·개정 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http://www.law.go.kr))'
- 앱: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 등을 통해 '국가법령정보 (Korea Laws)' 앱을 다운

| '국가법령정보 (Korea Laws)' 앱                                                           | 아이폰용 QR 코드                                                                        | 안드로이드용 QR 코드                                                                        |
|-----------------------------------------------------------------------------------|-----------------------------------------------------------------------------------|-------------------------------------------------------------------------------------|
|  |  |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                     |                   |                  |
|---------------------|-------------------|------------------|
|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 나. 마버그열           | 다. 라싸열           |
|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 바. 리프트밸리열        |
| 사. 두창               | 아. 페스트            | 자. 탄저            |
| 차. 보툴리눔독소증          | 카. 야토병            |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
|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 너. 신종인플루엔자          | 더. 디프테리아          |                  |

(이하 생략)

#### ■ 개인정보보호법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 제 17 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 15 조제 1 항제 2 호 · 제 3 호 · 제 5 호 및 제 39 조의 3 제 2 항제 2 호 · 제 3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 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 2 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 22 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 6 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 1 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 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수집 ·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 15 조 제 1 항 제 1 호, 제 17 조 제 1 항 제 1 호, 제 23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4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 3 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 4 항 및 제 18 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 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⑦ 제 1 항부터 제 6 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 6 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23 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 · 신념, 노동조합 · 정당의 가입 ·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 15 조 제 2 항 각 호 또는 제 17 조 제 2 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 1 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 29 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 24 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 15 조 제 2 항 각 호 또는 제 17 조 제 2 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 삭제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 1 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 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 3 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 4 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 24 조의 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 24 조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 · 대통령령 ·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 3 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 1 호 및 제 2 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 24 조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 1 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 3 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 · 지원할 수 있다.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제 2 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 · 1 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 월 1 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 월 말일, 1 월 1 일, 2 일)
5. 석제
6. 부처님 오신날(음력 4 월 8 일)
7. 5 월 5 일 (어린이날)
8. 6 월 6 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 월 14 일, 15 일, 16 일)
10. 12 월 25 일(기독탄신일)
- 10 의 2. 「공직선거법」 제 34 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제 3 조(대체공휴일)

- ① 제 2 조제 4 호 또는 제 9 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 2 조제 4 호 또는 제 9 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 ② 제 2 조제 7 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 2 조제 7 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6 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 23 조제 1 항제 3 호의 2 에 따라 발굴된 희생·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 1 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 1 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4 조 또는 제 5 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 4 조제 1 항제 3 호부터 제 6 호까지, 제 8 호, 제 14 호 및 제 15 호의 국가유공자(이하 "전몰군경등"이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 3 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 74 조의 5 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 4 조제 1 항 각 호(제 1 호, 제 2 호 및 제 10 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⑥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 국민건강보험법

### 제 41 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제 1 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 1 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 1 항제 2 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 4 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 1 항제 2 호의 약제: 제 41 조의 3 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③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 3 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 5 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① (생략)

② 제 1 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약계 · 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조혈모세포이식 및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약계 · 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각각 고시한다.

④ (생략)

### 제 9 조(비급여대상)

① 법 제 41 조제 4 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 와 같다

[별표 2] 비급여대상

1.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 · 약제 및 치료재료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 다모(多毛) · 무모(無毛) · 백모증(白毛症) · 딸기코(주사비) · 점(모반) · 사마귀 · 여드름 ·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 · 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노생식기 질환  
라. 단순 코골음  
마.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포경(phimosis)  
바. 검열반 등 안과질환  
사. 기타 가목 내지 바목에 상당하는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

(이하 생략)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 15 조(등급판정 등)

(생략)

②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 12 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 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

(생략)

④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제 14 조제 1 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2.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⑤ 등급판정위원회는 제 4 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 2 항에 따라 다시 수급자 등급을 조정하고 수급자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 제 23 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라.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 가. 가족요양비 : 제 24 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 나. 특례요양비 : 제 25 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 26 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 (이하 생략)

#### 제 29 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 15 조제 4 항에 따른 조사나 제 60 조 또는 제 61 조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거절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 ②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는 데에 가담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중단하거나 1 년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의 횟수 또는 제공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제 2 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중단 및 제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제 2 조(노인성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 조제 1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란 별표 1 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별표 1]

노인성 질병의 종류

| 구분          | 질병명                   | 질병코드 |
|-------------|-----------------------|------|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 |
|             | 나. 혈관성 치매             | F01  |
|             |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F02* |
|             | 라. 상세불명의 치매           | F03  |
|             | 마. 알츠하이머병             | G30  |
|             | 바. 지주막하출혈             | I60  |
|             | 사. 뇌내출혈               | I61  |
|             |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I62  |

|                                |       |
|--------------------------------|-------|
| 자. 뇌경색증                        | I63   |
|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I64   |
| 카.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5   |
|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6   |
| 파. 기타 뇌혈관질환                    | I67   |
|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I68*  |
|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I69   |
| 너. 파킨슨병                        | G20   |
| 더. 이차성 파킨슨증                    | G21   |
|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G22*  |
|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G23   |
| 버. 중풍후유증                       | U23.4 |
| 서. 진전(震顫)                      | R25.1 |

비고

1.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 제 22 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른다.
2. 진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 한다.

## ■ 민법

### 제 27 조(실종의 선고)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 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 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 1 항과 같다.

### 제 28 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 상법

### 제 651 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 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 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 32 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 (이하 생략)

### 제 33 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 ① 개인신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제 1 호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3.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 32 조 제 6 항 각 호의 경우
  5. 그 밖에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 32 조 제 1 항 각 호의 방식으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28 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 ① 삭제
-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 32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사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이하 생략)

### 제 28 조의 2(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법 제 33 조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각 호의 자가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그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하기 위한 목적을 말한다.

1. 「보험업법」 제 2 조제 6 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수행하는 같은 조 제 2 호에 따른 보험업 또는 같은 법 제 11 조의 2 에 따른 부수업무로서 개인의 건강 유지·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예방 및 악화 방지 등의 목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이하 생략)

## ■ 의료급여법

### 제 7 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검사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② 제 1 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방법·절차·범위·한도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 2 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의료급여법 시행령

### 제 13 조(급여비용의 부담)

① 법 제 10 조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는 별표 1 과 같다.

1. 삭제
2. 삭제

② 삭제

③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 15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기금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항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④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외에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라 한다)과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다.

⑤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별표 1 제 1 호라목·마목, 같은 표 제 2 호마목·바목 및 같은 표 제 3 호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매 30 일간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의 100 분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2 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1 종수급권자 : 2 만원
2. 2 종수급권자 : 20 만원

⑥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서 제 5 항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초과금액이 2 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1. 1 종수급권자 : 매 30 일간 5 만원

2. 2 종수급권자 : 연간 80 만원. 다만, 「의료법」 제 3 조제 2 항제 3 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 240 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연간 120 만원으로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제 6 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초과금액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 의료법

### 제 2 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신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

라. 제 80 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 제 3 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신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 조제 5 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 58 조제 1 항제 4 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 3 조의 2 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생략)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를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 ■ 장애인복지법

### 제 32 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 2 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이하 생략)

## ■ 전자서명법

###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 가. 서명자의 신원
  -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3. "전자서명생성정보"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4. "전자서명수단"이란 전자서명을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수단을 말한다.
5. "전자서명인증"이란 전자서명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인증서"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7. "전자서명인증업무"란 전자서명인증, 전자서명인증 관련 기록의 관리 등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8. "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9. "가입자"란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전자서명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10. "이용자"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제 2 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 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 분의 1 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 260 조제 1 항(폭행), 제 283 조제 1 항(협박), 제 319 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 366 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 260 조제 2 항(존속폭행), 제 276 조제 1 항(체포, 감금), 제 283 조제 2 항(존속협박) 또는 제 324 조제 1 항(강요)의 죄
  3. 「형법」 제 257 조제 1 항(상해) · 제 2 항(존속상해), 제 276 조제 2 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 350 조(공갈)의 죄
-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 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 2 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제 2 항제 1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 년 이하의 징역
  2. 제 2 항제 2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 년 이상 12 년 이하의 징역
  3. 제 2 항제 3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 년 이상 20 년 이하의 징역
- ④ 제 2 항과 제 3 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 260 조제 3 항 및 제 283 조제 3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3 조(집단적 폭행 등)

- ① 삭제
  - ② 삭제
  - ③ 삭제
- ④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 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형법」 제 261 조(특수폭행)(제 260 조제 1 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 284 조(특수협박)(제 283 조제 1 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 320 조(특수주거침입) 또는 제 369 조제 1 항(특수손괴)의 죄: 1 년 이상 12 년 이하의 징역
  2. 「형법」 제 261 조(특수폭행)(제 260 조제 2 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 278 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 276 조제 1 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 284 조(특수협박)(제 283 조제 2 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 324 조제 2 항(강요)의 죄: 2 년 이상 20 년 이하의 징역
  3. 「형법」 제 258 조의 2 제 1 항(특수상해), 제 278 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 276 조제 2 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 350 조의 2(특수공갈)의 죄: 3 년 이상 25 년 이하의 징역

## ■ 형법

### 제 24 장 살인의 죄

#### 제 250 조(살인, 존속살해)

-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 251 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 252 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 ①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 253 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 250 조의 예에 의한다.

(이하 생략)

**제 25 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 257 조(상해, 존속상해)**

-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 1 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전 2 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 258 조(중상해, 존속중상해)**

-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 2 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 년 이상의 15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중략)

**제 259 조(상해치사)**

-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 260 조(폭행, 존속폭행)**

-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500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 1 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 261 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260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62 조(폭행치사상)**

전 2 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 257 조 내지 제 259 조의 예에 의한다.

(이하 생략)

**제 32 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 297 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 297 조의 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중략)

**제 299 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 297 조, 제 297 조의 2 및 제 298 조의 예에 의한다.

(이하 생략)

**제 38 장 절도와 강도의 죄**

(생략)

**제 333 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 334 조(특수강도)**

-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 333 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 335 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 2 조의 예에 의한다.

**제 336 조(인질강도)**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하 생략)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생략)
- 2. (생략)

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 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  
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가.~마. (삭제)

4.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  
정을 말한다.

(이하 생략)